

5·18민주화운동 38주년 및 광주청문회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주 제 5·18광주청문회 30년, 성과와 과제
일 시 2018.04.05.(목) 14:00~17:00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 최 5·18기념재단, 국회의원 이해찬
후 원 한겨레신문, 광주MBC



5·18기념재단 국회의원 이해찬

P/R/O/G/R/A/M

■ 개요

- 일시 : 2018년 4월 5일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 5.18기념재단, 국회의원 이해찬
- 후원 : 한겨레신문, 광주MBC, 광주KBS

■ 진행순서

시간	소요시간 (분)	진행항목	진 행
13:50~14:00	10	5·18 영상 시청	-
14:00~14:10	10	개회 선언·내빈 소개	조진태 상임이사(5·18기념재단)
14:10~14:15	5	개회사	김후식 이사장 직무대행(5·18기념재단)
14:15~14:20	5	인사말씀	이해찬 국회의원(전 국무총리)
14:20~14:25	5	축사 1	추미애 대표(더불어민주당)
14:25~14:30	5	축사 2	이정미 대표(정의당)
14:30~14:50	20	주제 발표 1 5·18 국회 광주특위 활동 성과와 한계	김형완 소장(인권정책연구소)
14:50~15:00	10	토론 1	송선태 정무비서관(전 국무총리실)
15:00~15:10	10	토론 2	이재의 박사
15:10~15:20	10	토론 3	홍지은 변호사(법무법인 지음)
15:20~15:40	20	휴식시간	
15:40~16:00	20	주제 발표 2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미래적 가치	김세균 명예교수(서울대)
16:00~16:10	10	토론 4	이승우 교수(가천대 법과대학)
16:10~16:20	10	토론 5	김귀옥 상임의장(민교협)
16:20~16:30	10	토론 6	최용주 박사, 비상임연구원(5·18기념재단)
16:30~17:00	30	종합토론	
17:00	-	폐회	

▣ 프로그램	i
--------	---

▣ 목차	iii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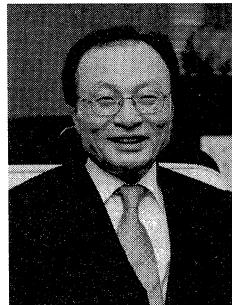
제1주제 | 5·18 국회 광주특위 활동 성과와 한계

발 표 김형완 소장(인권정책연구소)	1
토 론 송선태 정무비서관(전 국무총리실)	21
이재의 박사	29
홍지은 변호사(법무법인 지음)	37

제2주제 |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미래적 가치

발 표 김세균 명예교수(서울대학교)	49
토 론 이승우 교수(가천대 법과대학)	61
김귀옥 상임의장(민교협)	77
최용주 박사, 비상임연구원(5·18기념재단)	83

인사말



이해찬 국회의원(전 국무총리)

진실과 화해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38주년 및 광주청문회 3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에 참석하신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멀리 광주에서 오신 5.18기념재단 김후식 이사장 직무대행님과 관계자 여러분, 광주유공자와 가족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88년 광주청문회에 참여한 사람 중 제가 유일한 현직 의원이어서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3주 후, 4월 27일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립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55년 만에 뚫은 남북 혈로가 불과 3년 만에 막히고 8년 만에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 말씀처럼 민주와 평화는 하나입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민주주의가 회복되니 평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정권교체는 촛불시민의 힘으로 이룬 것입니다. 230만 촛불시민의 외침이 없었더라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무산됐을지도 모릅니다.

박근혜 탄핵은 87년 6월 항쟁의 성과로 직선제 개헌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부활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군부독재를 무너뜨린 6월 항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박종철 군의 죽음으로 촉발되었지만 80년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도도하게 흐른 민주화의 봇물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지난 일이지만 6월 항쟁 당시 청와대에서 군부 진압을 검토했다가 80년 광주를 서울에서 재현했다가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해 포기했다고 들었습니다. 5월 광주가 없었다면 6월 항쟁도 없었습니다.

80년 광주와 87년 6월 항쟁, 16-17년 촛불은 하나의 역사입니다. 38년 전 수십만의 광주시민들이 겪었을 슬픔과 분노가 패배주의와 좌절로 스러지지 않고 응집되어 수십년간 민주세력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광주시민과 광주정신에 새삼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술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꺾이지 않는 민중과 시민의 힘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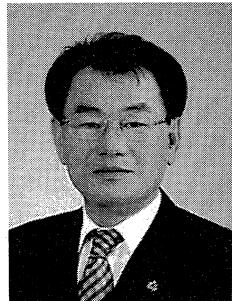
올해는 88년 광주청문회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주청문회는 88년 13대 총선에서 재야 민주화 세력이 합류한 평화민주당 돌풍으로 이룬 여소야대의 성과였습니다. 재야와 대학가에서만 유통되던 광주의 진실을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알린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초선의원으로 광주청문회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만 여러 한계로 발포명령자 규명 등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헬기사격 증거, 시민 암매장 증언 등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면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규명 요구가 거셌지만 당사자들은 외면했습니다. 비로써 지난 3월 13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되었습니다. 정권교체가 안됐더라면 실현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9월 출범하는 진상규명위원회는 부디 광주의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진실규명 없이는 화해는 불가능합니다.

올해 기념행사는 5·18광주의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게 됩니다. 80년 광주와 88년 광주 청문회를 기억하고,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평가하며, 진실 앞에서 역사와의 화해를 염원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발표를 해주시는 김형완 소장님, 김세균 교수님과 여러 토론자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행사를 후원해주신 한겨레, 광주MBC, 광주KBS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개회사



김후식 이사장 직무대행(5·18기념재단)

안녕하십니까?

5·18기념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김후식입니다.

5·18민주화운동 38주년이면서 광주청문회 30년을 맞아 이 곳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성과와 과제를 되짚어 볼 수 있는 학술대회를 이해찬 의원실과 함께 준비하게 되어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국회를 열어주신 정세균 국회의장님, 당을 대표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님, 정의당 이정미 대표님과 각 부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님과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님을 비롯하여, 토론에 참여해 주신 각계 전문가와 여야 의원 여러분, 그리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는 38년 만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진상규명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되었고, 대한민국 민주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항쟁임을 모든 국민과 세대가 공감할 수 있도록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명시해야 하는 한 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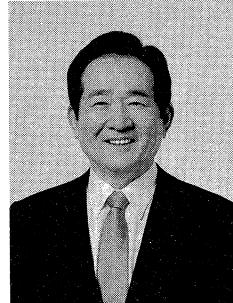
1988년부터 1989년까지 5공비리 특별위원회에서 광주청문회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를 펼쳤으나, 증인들은 변명과 모르겠다는 대답으로 일관하였고, 구체적인 진상조사 보고서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광주청문회는 5·18의 진실에 대해 만천하에 알리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고, 5·18특별법 제정의 사실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등 모사반란의 수괴들을 단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5·18의 진상규명은 미완의 것으로 남아있었고, 2007년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진상규명 활동이 진행되었으나, 집단발포 명령자, 암매장, 민간인학살, 헬기사격, 교도소 습격사건의 진실 등 여전히 많은 의혹들을 남겨두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다시 진행될 진상규명 활동은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에 이루어졌던 진상규명의 성과와 개선해야 할 과제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광주청문회 3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고, 이것이 5·18민주화운동의 미완의 진상규명 활동에 있어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정세균 국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정세균입니다.

올해로 5·18 민주화운동 38주년과 광주청문회 30주년을 맞이하여 《5·18광주청문회 30년, 성과와 과제》 학술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애쓰신 이해찬 의원님과 5·18기념재단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부당한 유신세력에 맞서 오직 민주주의의 회복만을 외쳤던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어느덧 38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광주시민의 숭고한 희생은 우리의 민주화 역사의 이정표가 되었으며 6월 민주항쟁과 촛불혁명으로 이어져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30여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5·18 민주화운동을 이용한 왜곡 및 편웨 활동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 매우 가슴 아픈 심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5·18 광주의 정신과 의미를 상기시키는 오늘이 매우 의미 있다 하겠습니다.

성숙한 민주주의의 결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규명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 2월 통과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에 동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 기대되어집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라는 꽃을 피운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이

규명되고 새롭게 이어지는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지속 될 수 있는 뜻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 만물에서 봄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에 펼쳐지는 학술대회의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 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추미애 대표(더불어민주당)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입니다.

올해로 민주화의 여명을 밝힌 5·18민주화운동이 38주년이 되었습니다. 그 날의 진실을 파헤치던 광주청문회도 30주년이 되었습니다. 왜곡되어서도 잊어서도 안 될 그 날의 함성을 되새기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5·18기념재단과 이해찬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5월 광주가 남긴 아픔과 상처를 간직하신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고견을 들려주시고자 참석해주신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1980년 5월 광주의 함성으로 우리 민주주의는 한 걸음 더 나아갔지만, 아직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슬 퍼런 독재 정권에 정면으로 맞섰던 평범한 시민들의 용기만큼은 6월 항쟁으로 거쳐 1700만 촛불혁명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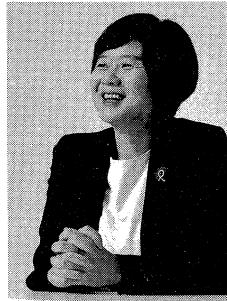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에는 우리 역사의 정통성과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계승을 명시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의 왜곡에 대해 단호히 대처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여 앞으로 책임 있고 철저하게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학술대회가 과거에 이뤄졌던 5·18 국회 광주특위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개선해야 할 점을 모색하여 다시 진행될 진상규명 활동의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제대로 밝히지 못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이 낱낱이 밝혀지길 바라며, 150만 광주 시민의

아픔과 상처가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정신으로 승화되길 기원합니다.

민주화 역사의 성역으로 자리 잡은 5·18민주화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학술대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전하며,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하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축사



이정미 대표(정의당)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국회 광주특위 활동 30주기를 맞은 뜻 깊은 해에 성공적으로 이번 학술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행사를 준비하신 5·18기념재단 임·직원여러분과 이해찬 의원님께 감사와 격려인사 드리며, 모쪼록 이번 행사를 계기로 미완의 5·18 과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새겨 넣는 개헌안을 내놓아 주목받는 등 5·18민주화운동은 한국현대사의 빛나는 기록으로서 그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뤄낸 2년 전 촛불시민혁명 역시 37년 전 5·18민주화운동과 한 흐름에 놓여 있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달 5·18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국방부가 직접 5·18 당시 비무장시위대를 겨냥한 육군의 헬기사격 사실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려는 우리사회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선 학살극의 주범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며 진실을 외면하는 형편입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의와 폭력에 불굴의 저항과 뜨거운 연대로 맞섰던 오월정신에 시효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아직 다 밝히지 못한 80년 5월 광주의 진실을 조명하고, 오월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데 정의당은 계속해 앞장설 것입니다. 5·18 학살의 최종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노력 역시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 학술토론회가 철저하게 얻어낸 우리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또 한 번 되새기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한 주최측에 감사인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발표문 1 •

5·18 국회 광주특위 활동 성과와 한계

김형완 소장(인권정책연구소)

기억투쟁이 곧 역사투쟁이다.

김형완 소장(인권정책연구소)

1 | 518광주민주화운동 개괄

1-1. 정의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광역시(당시 광주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시민들이 벌인 민주화 운동.

1-2. 역사적 배경

5·18광주민주화 운동은 ‘광주민중항쟁’, ‘광주시민항쟁’, ‘광주항쟁’, ‘광주의거’ 등으로 불리우나, 과거에는 신군부와 관변 언론 등에 의해 ‘광주소요사태’, ‘광주사태’, ‘폭동’ 등으로 보도되기도 하였다. 계엄령 철폐와 전두환(全斗煥) 보안사령관을 비롯한 신군부 인사들의 퇴진, 김대중(金大中) 석방 등을 요구하였다. 1980년 발발 당시 당국에 의해 ‘극소수 불순분자와 폭도들의 난동(광주사태)’으로 규정되었다가 제6공화국 출범 이후인 1988년 4월 1일 민주화 추진위원회에서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정식 규정되었고, 같은 해 11월 제13대 총선(4월 26일)의 소산인 여소야대 국회에서 사건규명을 위한 국회 광주특위청문회가 개최되었다.

대통령 박정희(朴正熙)의 장기간 군사독재는 1979년 10월 4일 신민당 총재 김영삼(金泳三)에 대한 의원직제명을 시발로 10월 15부터 10월 20까지 부산·마산 등지에서는 부마항쟁(釜馬抗爭)이 일어났고, 이에 대한 대응을 둘러싼 내부갈등으로 10월 26일 김재규(金載圭)가 박정희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10·26사태 이후 보안사령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12·12군사반란을 통해 군부를 장악하였다. 이듬해인 1980년 2월 29일 김대중 등이 복권되었으나, 신군부는 실권을 장악하고 최규하(崔圭夏) 과도정부를 내세워 국민들이 요구하는 민주화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자신들의 집권 알리바이를 구축하고 있었다.

신군부의 집권 야욕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표출되다가 강원도

사북사태(舍北事態, 4월 19~4월 24일)로 대표되는 생존권 문제로까지 확산되었다. 5월 1일 대학의 학원문제가 교외로 확산되면서 5월 13일부터 5월 14일에 걸쳐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37개 대학에서 계엄철폐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5월 15일에는 서울역에서 대규모 학생시위가 야간까지 지속되는 등 절정에 달하였다. 마침내 5월 17일 신군부 세력이 배후에서 조종하던 비상국무회의가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 한정되었던 기존의 비상계엄을 전국에 확대하는 계엄포고 10호(17일 24시에 발효: 각 대학 휴교령 포함)를 밤 9시 40분에 의결하고 밤 11시 40분에 발표하면서 밤 11시를 전후한 시점부터 김대중 등 민주화 인사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광주민주화운동은 이러한 배경 아래 5월 18일부터 시작되었다.

1-3. 경과

신군부를 중심으로 한 집권세력이 국민을 억압하려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광주에서의 공수부대 중심의 무력진압이 학생과 시민의 분노를 유발하였고 진압의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무력저항으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광주민주화운동은 학생시위에서 시민봉기로 다시 무장항쟁으로 상승되었다. 5월 13일 서울에서의 대규모 학생시위에 이어 광주의 대학생들은 14일과 15일 가두에 진출하였고, 5월 16일 다른 지역에서는 소강국면에 접어들었으나 광주에서는 야간에 횃불시위가 감행되었다. 5월 18일 0시 5분경 정동년(鄭東年) 등 광주지역의 복학생과 총학생회 간부들이 예비 검속되었으며, 1시 경 광주 일원에 공수부대가 투입되고 각 대학에 계엄군이 진주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결행된 5월 18일의 학생시위는 저항의 발단이었다. 휴교령이 내려질 경우 교문 앞에서 집결한다는 결의에 따라 학생들은 전남대학교 앞에 모였다. 공수부대원들은 전남 대 앞 시위를 공격적으로 저지하였으며 대학생들은 광주역에 재집결해서 시위를 하였다. 시위 대가 점차 늘어나면서 공수부대원이 시내에서 시위진압에 나섰으며 18일 오후 1시부터 무차별 진압작전이 이루어졌는데, 계엄군은 당초부터 총기에 착검을 한 채 시위진압에 나서 총상 외에도 타박상과 자상에 의한 사상자가 속출하게 하였다. 계엄군이 금남로 등 시내 중심가에서 학생으로 보이는 청년뿐 아니라 부녀자 등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마구 구타하고 짓밟으며 찌르는 등의 잔혹 행동을 하자 시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이에 시위대는 오후 4시 이후 파출소 파괴 등 자구적 대응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계엄군의 무력 과잉진압은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켜 오히려 시위를 확산시키고, 시민들을 단결시켰으며, 결국 19일 시민·학생 연대가 구성되기에 이른다. 19일 오전에는 일시적 소강상태였으나 오후 들어서 분노한 학생·시민들이 군·경찰과 공방전을 벌이면서 시위는 점차 격화되었다. 시민들은 공포감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단순한 학생시위에서 시민봉기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19일 밤비가 내리는 가운데 시위가 산발적으로 계속되었으며, 20일 오전 비가 그치고 대규모 시위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오후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20일 오후 6시부터 택시와 버스 운전 기사들이 광주역과 무등경기장에 모여 대형 버스와 트럭을 앞세우고 일시에 금남로에 집결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들을 앞세운 시위는 계엄군을 몰아내는 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시위대는 전라남도 도청을 지키는 군경을 포위하고 접전을 계속하였으며 시위는 밤까지 계속되었다. 그 과정에서 왜곡보도를 일삼던 MBC와 노동청, 세무서 등이 시위대에 의해 불탔다. 20일부터 도시빈민과 노동자들도 시위에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양측에서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계엄군에게 실탄이 지급되었다. 많은 희생자를 냈던 20일 밤 계엄군의 무차별 발포로 시민들은 무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1일 오전 아세아자동차 공장에서 장갑차와 군용차량을 탈취하였다.

이에 계엄군은 정오 경 도청에서 시위대에 조준사격을 하였으며 결국 시민들은 무장을 위해 오후 1시 경부터 화순·해남·나주 등 광주의 인근 시외지역에 진출하여 무기를 탈취하였고 농민도 시위에 참여하게 되었다. 결국 오후 3시 경부터 시민들에게 무기들이 지급되어 계엄군과 시가전이 벌어졌다. 시민봉기가 무장항쟁으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시민군과 계엄군의 총격전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생겼다. 21일 오후 5시부터 8시 사이에 계엄군은 광주에서 외곽지역으로 퇴각하였다. 5월 22일 아침부터 27일까지 광주를 장악한 시민군은 자치활동을 수행하였는데 23일 오후부터 매일 오후 2시에 민주수호 범시민궐기대회를 열어 투쟁목표를 재확인하였다(26일에는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3시 2차례 개최). 그러나 22일 오후 도청에서 도청간부까지 참여하여 구성된 수습대책위원회가 광주시민의 요구를 수렴하기보다는 미온적인 태도로 계엄사령부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원상복구와 사태 회복에만 주력하였다는 평가도 있다. 무기 회수를 둘러싸고 수습위 내부는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일부 시민은 무기를 반납하였으며 일부는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해 이러한 갈등은 결국 강·온 대립을 낳았다. 이에 강경파 학생들은 범시민궐기대회를 통해 수습 대책위원회를 비판하고 25일 밤 10시 새로운 투쟁지도부를 자처한 민주시민투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자발적인 시민단체들은 시민자치와 민주주의공동체 구현에 대해 새로운 시도를 하려 했으나 그 기간이 너무 짧았다. 27일 새벽 외곽도로를 봉쇄하고 탱크 등으로 무장한 2만 5000여 계엄군의 대대적인 무력진압이 감행되었다. 도청에 있던 시민군이 오전 5시 22분에 전원 사살 또는 연행됨으로써 광주지역은 계엄군에 넘어갔으며, 아침 7시 30분경부터 밤 10시 50분경까지 가택수색이 이루어져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상무대로 연행되었다.

결국 광주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막을 내렸다.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 검찰부의 1995년 7월 18일 발표에 의하면 그때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93명인데 이 중 군인 23명, 경찰 4명, 민간인 166명이다. 부상은 852명으로 확인되었다.

1-4. 결과

광주학살을 계기로 신군부의 권력은 공고해졌다. 이들은 김대중과 주요 재야인사들,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내란기도 혐의로 구속하였다.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7월 14일 김대중 일당 내란 음모사건이 발표되었다. 결국 신군부의 집권은 기정사실이 되었고, 8월 16일 최규하(崔圭夏) 대통령이 잔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하야함으로써 전두환은 8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선거에 의해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이로서 전두환 정권의 공식 출범이 가능하게 되었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압방법에 대한 법적 논란이 제기되었다. 1994년 5월 13일 정동년 등 광주민주화운동의 관련자들은 전두환·노태우 등 35명을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1995년 7월 18일 검찰은 ‘공소권 없음’이란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5·18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요구가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노태우(盧泰愚) 전대통령이 11월 16일 비자금 관련사건으로 구속되면서 11월 24일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자유당에 “5·18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전격적 지시를 내렸다. 김영삼은 국민들의 요구에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구호로 부응하였던 것이다.

11월 30일 검찰은 12·12사건과 5·18 사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재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전두환 전대통령도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12월 3일 구속 수감되었다. 12월 19일 5·18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1996년 1년 내내 전두환·노태우 피고인에 대한 12·12사건 및 5·18사건, 비자금사건 관련 공판이 진행되었다. 재판의 과정에서 전두환은 제5공화국 정부는 합헌정부로서 내란정부로 단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노태우는 이 사건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재판부가 1997년 4월 17일 12·12사건은 군사반란이며 5·17사건과 5·18사건은 내란 및 내란목적의 살인행위였다고 단정하였다.

1996년 12월 16일 항소심에서 전두환은 무기징역, 벌금 2,205억원 추징을, 노태우는 징역 15년에 벌금 2,626억원 추징이 선고되었고, 1997년 4월 17일의 상고심에서 위 형량이 확정되었으나 김대중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즈음해 1997년 12월 22일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

1-5. 의의와 평가

5·18광주민주화운동은 1950년 6·25전쟁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정치적 비극이었으며,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있어 가장 큰 사건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광주민주화운동을 계기로 한국의 사회운동은 1970년대 지식인 중심의 반독재민주화운동에서 1980년대 민중운동으로의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광주민주화운동 기간 중 항쟁의 주체들은 당시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이 진압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전의 친미적인 민주화 운동과는 다른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1988년 여름 대한민국 국회에 설치된 5·18광주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가 월리엄 글라이스턴 당시 주한미국대사와 전 한미연합사령관 존 위컴 장군의 증언을 요구하자 미 국무부는 그들의 증언을 거부하는 대신 광주특위의 서면 질문에 국무부가 동의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이 결과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미국정부의 성명서'가 1989년 6월 19일에 작성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당시 한국 당국은 1980년 5월 18일 0시 1분에 시작된 전국계엄령 선포를 불과 2시간 여 앞둔 전날 21시 30분경에 미국에 통보하였으며, 광주의 관영 라디오 방송이 한국 특전사의 광주파견에 대해 미국이 승인하였다고 방송했지만 이는 거짓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 계엄사가 광주에 동원한 특전사나 20사단은 광주 투입 당시 한미연합사 작전통제권 아래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광주에 동원된 것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광주에서 행한 것에 대하여 미국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글라이스턴 주한미국대사는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의 전모를 파악했을 때 특전사의 과잉진압이 비극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판단했으므로 특전사의 작전에 대한 사전 승인에 대하여 강력하게 부인하였던 것이다. 글라이스턴 등은 당시 전두환 장군을 방문하여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하면서 종용과 설득, 압력이 모두 실패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미국은 극히 미미한 영향밖에 미칠 수 없었다고 변명하였다.

2

국회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 배경

1985년 6월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광주사태보고서'에 따르면 518 직후 10일간 사망자를 파악해 유족 164명에게 1430만원 씩 위로금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그 후에도 몇 차례 입법절차 없이 행정차원에서 위무책이 모색되었다.

그러다 1988년 1월 20일 6공하의 민주화합추진위원회는 광주문제 치유 대정부건의안을 만들었는데, 이게 광주보상법의 효시이다. 노대통령은 그해 4월 그때까지 폭동으로 불리던

518을 광주학생과 시민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으로 규정하고 이 전의안을 바탕으로 광주치유대책을 발표했다. 후속조치로 88년 6월 국회에 광주특위가 구성되었고, 동시에 광주와 중앙에 지원협의회를 만들어 피해자에 대한 접수를 받았다. 그 해 11월 17일 국회 광주특위에서 청문회가 시작되자 이에 발맞추어 10일 후인 11월 26일 노태우대통령은 518치유를 위한 특별법제정 뜻을 밝혔다. 1988년 4월 26일 총선에서 지역구와 전국구 의석을 합쳐 전체의석 299명 가운데 야당인 평민당이 71석, 민주당이 59석, 공화당이 35석을 차지한 반면, 집권당인 민정당이 125석으로 과반수에 24석이 미달한 데 따라 1990년 2월 9일 3당 총수인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이 3당합당을 발표했으며 이로써 국회의석의 72.2%를 가진 민자당이 태어났다. 이를 계기로 사실상 국회 광주특위는 표류하기 시작했다. 3당합당 직후인 90년 3월 8일 국회 법사위에 민자당안이 단독으로 회부됐는데, 이 안은 진상규명 등 명예회복 부분이 흐지부지된 상태였다. 급기야 그해 7월 14일 국회는 여당 단독으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날치기로 통과시켜버렸다. 그러자 야당을 비롯한 5월 관련단체는 즉각 보상 법시효 거치분신청을 하는 등 날치기로 통과된 보상법에 대해 무효화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법안을 기초로 90년 8월 17일부터 9월 15일까지 피해보상을 강행하였다. 소위 제1차 보상이다. 이때 신청자 2,690명 중 2,227명에게 1,426억 7,5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날치기식 보상에 반발한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보상은 광주를 또 한 번 죽이는 일이라며 보상을 거부하였다.

광주문제의 해결은 진상규명, 책임자처리, 명예회복, 손해배상, 기념사업 등이 핵심이다. 이것은 크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자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과 이를 전제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기념사업 등의 조치를 의미한다. 논리적으로는 책임규명 절차가 앞서고 보상은 그 뒤를 따르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반대로, 보상이 앞서고 진상규명은 제한적으로 밝혀지고 형사상의 책임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1988년 11월 17일 여소야대 정국에서 시작된 국회 광주청문회는 5공청문회와 더불어 광주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동안 사건 자체가 통째로 지하에 매장되어 있다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의제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그 해 11월 26일 노태우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해 518치유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이때 노태우대통령이 언급한 특별법은 진상규명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해보상에 한정된 내용을 뜻했다. 결국 1989년 2월 24일 불과 세 달여 만에 광주청문회가 갑자기 중단되었다. 청문회에서 광주문제의 진실이 상당부분 밝혀지자 위기의식을 느낀 집권세력 내부에서 강력한 반발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로부터 광주청문회는 표류하기 시작했고 광주문제의 해결은 국회를 떠나 다시 가두시위의 단골메뉴가 되었다. 광주학살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전국적 시위가 잇따르자 결국 89년 12월 31일 전두환이 국회에 출석 발언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전씨는 광주학살책임을 전면 부인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발언으로 여론에 기름을 들이 붓고 말았다. 이 와중에 여소야대는 3당합당으로 여대야소로 전환되면서 그야말로 광주청문회는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3 | 국회광주특위 활동 개괄

국회광주특위는 1988년 8월 25일 제정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부칙조항에 따라 소위 광주청문회를 개최하였다. 위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조사 및 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을 경우 감사 또는 조사를 마친 때에는 위원회는 자체 없이 그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이를 자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결과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여야 하며,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회광주특위는 결국 조사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활동의 결과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518민중항쟁에 대한 광주시민 및 민주진영의 일관된 요구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사상자 등에 대한 피해배상, 항쟁 관련자에 대한 재심 등을 포함한 명예회복,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등이었다. 그런데 광주특위 이후 취해진 조치로는 항쟁관련자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정 및 보상금지급, 국회광주특위에 의한 청문회 개최 등이다.

3-1. 국회광주특위 조사의 목적

1990년 2월 초안이 마련되었으나 결국 당시 정부여당 반대로 인해 최종 채택되지 못한 국회광주특위 국정조사보고서 초안에 의하면, 광주특위는 “1980년 5월 광주시 일원을 비롯한 전남지역에서는 민족적 비극이 일어나 많은 인명의 사상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으나 그 진상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발발 8년이 경과한 1988년,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소상히 밝혀 역사를 바로 잡고 광주시민을 포함한 국민의 명예를 회복시키며 다시는 이 땅에 그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민족정기를 이어주는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3-2. 국회광주특위 조사방법

1988년 여소야대 국회는 유신헌법 아래 중지되어온 국정감사를 되살리면서 광주특위의 조사방법을 조사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증언청취, 현장검증, 문서검증, 청문회 등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여야간 합의하였다.

3-3. 국회광주특위의 구성

제142회 국회 제9차 본회의(1988년 6월 27일 개최)에서 국회광주특위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헌법 제 61조 및 국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광주특위를 구성하되, 그 위원 수는 민주정의당 12인, 평화민주당 7인, 통일민주당 5인, 신민주공화당 3인, 무소속의원 1인 등 총 28인으로 확정하였다. 국회광주특위 구성결의안의 제안경위를 살펴보면, 1988년 6월 21일 민정당 이민섭의원 외 32인으로부터 ‘광주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고, 평민당 김원기의원, 통일민주당 최형우의원, 공화당 김용채의원 외 163인으로부터 ‘광주민화투쟁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동일자로 운영위에 회부되었으며, 1988년 6월 27일 제142회 국회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상정, 심사한 결과 두 건을 폐기하고 ‘518광주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였다. 이어서 1988년 6월 27일 제142회 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동 구성결의안을 상정, 의결하였다.

대안으로 채택되어 의결한 결의안을 살펴보면, 1988년 6월 27일 국회운영위원장이 제안자가 되어 헌법 제61조 및 국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정조사를 위한 ‘518광주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위원수는 민주정의당 12인, 평화민주당 7인, 통일민주당 5인, 신민주공화당 3인, 무소속 1인 등 총 28인으로 구성하였다.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이 적시하였다. “1980년 5월광주시 일원을 비롯한 전남지역에서는 민족적 비극이 일어났다. 즉 같은 달 18일부터 27일 사이에 수많은 인명의 사상이 빚어졌고, 헤아릴 수 없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국민의 대표임을 자임하는 우리 국회의원은 8년이 지난 오늘의 이 시점에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518광주민화운동의 진상을 소상히 밝혀, 역사를 바로 잡고 광주시민들을 포함한 국민의 명예를 회복시키며, 나아가 다시는 이 땅에 그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민족정기를 이어주는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명의식에 의하여 518광주민화운동진상규명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국회광주특위위원은 민주정의당의 김길홍, 김완태, 나창주, 신경식, 유수호, 이광노, 이궁규,

이도선, 이민섭, 이병용, 정동성, 조영장 등 12인, 평화민주당의 문동환, 신기하, 이해찬, 정상용, 정웅, 조순승, 최봉구 등 7인, 통일민주당의 김정수, 박태권, 신하철, 오경의, 최정식 등 5인, 신민주공화당의 김인곤, 옥만호, 조부영 등 3인, 무소속의 정몽준 등 총 28인으로 구성되었고, 1988년 7월 8일 개최된 제1차 국회광주특위회의에서 평민당의 문동환을 위원장으로, 간사위원으로 이민섭(민정당), 이해찬(평민당), 오경의(민주당), 김인곤(공화당)을 각각 선임하였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임된 문동환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광주특위의 역사적 사명을 강조하였다.

“우리 한국역사는 여러 가지 마음 아픈 매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광주민주화운동에서 일어난 비참한 참극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고 민화위에서도 이 문제가 그렇게 선언되었습니다. 이것은 폭동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이었다. 거기에 과잉대처가 있어서 민주화를 위해서 외쳤던 많은 생명들이 비참하게 끝나고 많은 부상자가 생기고 벌써 8년 동안 이러한 누명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지내 왔습니다. 모두가 이것을 심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진상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진상은 밝혀져야 합니다. 우리 역사를 쭉 훑어보면 언제나 강자들이 자기들 변호를 위해서 자기의 입장을 세우기 위해서 강자들의 의견을 적어온 것이 과거의 역사였습니다. 지난 8년 동안 광주사건도 이렇게 얘기되어 왔습니다. 사실 이것은 해방직후부터 밝혀져야 할 것들이 밝혀지지 않고 그래서 불의를 행한 강자들이 그대로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면서 우리나라의 풍토가 힘만 있으면 무엇이나 된다 하는 그런 풍토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힘의 철학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밝혀져서 정의가 이기는구나, 그러기에 정의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풍토가 우리 역사에서 이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려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사실을 밝혀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역사의 정의의 물꼬를 터놓아야겠습니다. 그래야 광주일대에서 한이 맺힌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역사가 후대의 자손만대에 이 역사가 바르게 흘러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518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1980년대 한국에 있는 국민 거의 전부가 민주화를 위해서 아우성치고 외치고 혹은 거리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는 계엄령이 났음에도 일어나 비참한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사실은 광주에서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는 한국에서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일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군화에 짓밟힌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려는 일은 이렇게 한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펴나가도록 하는 중차대한 임무입니다. 모든 편견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선 자리에서 이것을 각기 보고 판단하고 주장해왔습니다만, 이 일이 이렇게 중대하기에 각기 가졌던 편견을 버리고 사실을 사실대로 찾아서 역사적 사실이 바르게 결착되도록 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몹시 힘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직시하면 힘들 것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조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3-4. 국회광주특위 조사경과

3-4-1. 조사활동개요

국회광주특위는 1988년 7월 8일 제1차 회의에서 평화민주당의 문동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각 교섭단체의 간사로 민주정의당의 이민섭 위원, 평화민주당의 이해찬 위원(88년 8월 30일 제4차 회의에서 신기하 위원으로 교체), 통일민주당의 오경의 위원, 신민주공화당의 김인곤 위원을 간사로 선임한 이래 1989년 12월 30일 제32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총 32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988년 7월 18일 제1차 간사회의를 시작으로 1990년 1월 9일 제47차에 이르기까지 총 47회의 간사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제5공화국에 있어서의 정치권력형비리조사특별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전두환을 증인으로 채택, 증언을 청취하기도 하였다. 전체회의 중 19회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증언의 청취와 증거채택을 위한 조사활동을 하였다. 또한 정부 측에 대하여 총 362건의 자료를 요구하여 165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였으며, 문서검증반을 구성하여 국방부, 육군본부 및 총무처에 대하여 2차에 걸쳐 문서검증을 실시, 해당기관이 제출한 문서 및 그와 관련된 문서에 대한 서류검증을 하였다. 국회광주특위는 한미관계소위원회, 자료검증소위원회, 현장검증소위원회, 특별법제정 및 사후대책소위원회 등 4개 소위를 구성하였다. 한미관계소위는 전주한미대사 글라이스틴과 전주한미사령관 위컴에 대한 서면질문서를 작성 발송하였으며, 자료검증소위는 비디오와 사진, 지도, 문서 등 각종 자료를 검증하였으며, 현장검증소위는 조사 진척에 따라 필요한 현장검증을 실시하였고, 특별법제정 및 사후대책소위는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특별법안의 초안작성과 수습방안을 협의하고자 하였다. 1989년 12월 31일 제32차 광주특위회의에선 최규하를 불출석의 죄와 국회모욕의 죄로 고발조치하고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3-4-2. 국회광주특위 청문회

국회광주특위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활동의 일환으로 청문회를 개최하여 1988년 11월 18일부터 1989년 12월 31일까지 총 19차에 걸쳐 70명의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하였다. 그 중 전두환 증인의 증언은 국회5공특위와의 연석회의로 사전 서면질문에 대한 국회출석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청취하였다. 국회광주특위의 증인은 발발동기, 전개과정, 사후대책 등 크게 세 개의 범주로 나누어 선정하였고, 총 70명의 증인 가운데 불출석 증인은 13명이었다. 최규하, 전두환 증인에 대하여는 각각 2회, 장세동, 장사복 증인에 대해서는 각각 1회에 걸쳐 동행명령장을 발부, 집행하였으나 끝내 동행을 거부하였다. 청문회 출석요구별 증인명단은 다음과 같다.

1988년 11월 18일 최규하(불출석), 전두환(불출석), 김대중, 이희성
 11월 19일 주영복, 김상현
 11월 30일 정동영, 정승화, 심재철, 정기용, 김종배
 12월 6일 신현학, 이신범, 한상석
 12월 7일 정호용, 윤홍정
 12월 19일 최규하(불출석), 이희성(재신문), 소준렬
 12월 20일 전두환(불출석), 김옥길, 유병현, 최웅, 권승만
 12월 21일 박준병, 정웅, 서명원

1989년 1월 26일 최규하(동행명령 불출석), 김영택, 임정복, 이세영, 이순노, 류형근
 2월 23일 전두환(동행명령 불출석), 신경진, 이광영, 박병률, 송기숙, 조비오, 명노근, 흥남순(불출석), 윤영규, 박남선, 박효선, 윤강옥(불출석), 이재춘, 김태찬, 윤석루, 장세동(불출석), 김재명(불출석)
 2월 24일 김태종, 전용호, 정현애, 전춘심, 문장우, 이성전, 양지문, 김오진, 김덕수, 전계량, 이지현, 허청, 김태현, 이태원(불출석), 조갑제(불출석), 정호용(불출석), 최웅(불출석), 정웅, 안부웅(불출석), 윤홍정, 장세동(동행명령 불출석), 장사복(동행명령 불출석)
 12월 31일 전두환

3-4-3. 국회광주특위 문서검증반

국회광주특위는 1988년 11월 9일 제5차 회의를 통해 신경식, 안영기(이상 민정당), 신기하, 이해찬, 조찬형(이상 평민당), 이인제, 박태권(이상 민주당), 김문원(공화당) 등 총 8명으로 문서검증반을 구성하고 11월 14일부터 12월 3일까지 국방부, 육군본부, 육군제1문서보존소, 총무처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문서검증을 실시, 해당기관이 제출한 문서와 그와 연관된 문서에 대한 서류검증을 하였다.

3-4-4. 국회광주특위 한미관계소위원회

국회광주특위는 1988년 12월 10일 제18차 회의에서 한미관계소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문원(공화당), 김길홍(민정당), 조순승(평민당 후에 조홍규로 교체), 박태권(공화당) 등을 소위원에 선임, 총 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한미관계소위는 1989년 3월 6일 전주한미대사글라이스틴과 전주한미사령관 위컴에 대한 서면질문서를 발송하고 1989년 6월 21일에 답신을 받았다. 1988년 11월 21일자 국회광주특위 위원장 문동환 명의의 글라이스틴과 위컴에게 보내는 서한은 대한민국 국회가 광주특위를 구성하여 광주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의 원인과

정도를 조사하고 한다는 것을 알리면서 “미국이 그 사건에 조금이라도 개입했는지 조사하고자 한다.”고 전제한 뒤, 연말 이전에 출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미측은 12월 초 출석증언은 거부하면서 서면답변을 하겠노라고 답해왔다. 국회광주특위는 서면을 통해 12·12사태관련 7개항, 517비상계엄확대 관련 19개항, 한국 특전사 관련 7개항, 20사단관련 10개항, 광주항쟁진압작전관련 7개항, 진압시 사용무기관련 2개항, 항쟁시 미국의 입장 확인 관련 6개 등 총 58개항에 이르는 질문지를 작성하여 송부하였다.

3-4-5. 국회광주특위 현장검증소위원회

국회광주특위는 1988년 12월 10일 제18차 및 1989년 1월 11일 제23차 회의에서 현장검증 소위를 구성하고 소위원장에 김영진(평민당), 소위원에 김길홍, 정동호(이상 민정당), 장석화(민주당), 윤재기(공화당), 박찬종(무소속)을 선임하였다. 현장검증소위는 1989년 1월 16일 지원동 주남마을과 도청 앞 금남로 일대를 현장검증하는 것을 시발로 1월 17일 광주시 진월동, 송하동, 송암동 일대와 시청 등지와 3월 13일 도청과 해남지역, 3월 14일 광주교도소 등에 대한현장검증을 실시하였다.

3-4-6. 국회광주특위 자료검증소위원회

국회광주특위는 1988년 12월 10일 제18차 회의 및 1989년 1월 11일 제23차 회의, 그리고 1989년 1월 31일 제27차 회의를 통해 비디오와 사진, 지도, 문서 등 각종 자료들을 검증하기 위해 자료검증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신경식(민정당), 위원에 이해찬(평민당), 김운환, 김광일(민주당), 윤재기(공화당)위원을 선임하였다.

3-4-7. 국회광주특위 특별법제정 및 사후대책소위원회

국회광주특위는 1989년 1월 31일 제27차 회의를 통해 특별법안의 초안작성과 수습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당 소위를 구성하고 소위원장에 이인제(민주당), 위원에 박희태, 유수호(이상 민정당), 신기하(평민당), 김인곤(공화당)을 선임하였으나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갖지 못한 채 종료하고 말았다.

4 | 국회광주특위의 성과와 한계

4-1. 국가폭력에 대한 긴장과 성찰

세계인권선언은 그 전문에서 “인민들이 폭정과 억압에 견디다 못해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지 않게 하려면 평소에 인권이 법의 지배에 의하여 보호됨이 필수적”이라고 천명한다. 인권의 보호는 법치주의를 통해 폭정과 억압으로 상징되는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법 규범은 단지 실정법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자연법적인 규범성을 포괄한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하면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못 박는다. 게다가 이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는 있으나, 설혹 제한한다 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토박고 있다. 이것은 국가의 존립이유 자체가 기본권의 실현, 즉 인간 존엄성 보장에 관한 한 국가에게 무한책무가 있다는 진부(!)하지만 매우 중요한 상식을 새삼 상기시킨다.

촛불시민혁명은 국가(권력)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다. 시민들은 “이제 나라냐”라는 회의와 개탄을 통해 물음 자체가 금기시 되어온 ‘국가(권력) 정체성’을 되물었다. 이제껏 우리에게 국가에 대한 회의와 비판은 용납되지 않았다. 왕조국가에서 일제식민지, 한국전쟁과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거치면서 국가는 언제나 개인과 사회 앞에 우선하는 ‘신성국가’로 군림해 왔다. 국가는 그동안 정권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시민적 저항을 반국가, 또는 반체제로 싸잡아 낙인찍어 매도하고, 처벌했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기준에 의해 애국과 매국, 국민과 비국민, 모범시민과 불량시민이 갈려졌다. 이런 탓에 개인의 존엄성 보장은 물론, 시민(사회)의 형성 자체가 지체되었고, 무엇보다도 사회에 복속되어야 할 국가는 거꾸로 사회 위에 군림하게 되었다. 시민으로부터 형성되고 위임된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이 야만국가의 특징이라면, 민주공화국에서의 권력은 공공재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민주공화국의 시민성은, 실정법 따위로 절대화된 기존 체제와 질서에 저항과 회의라는 비판적 태도를 통해 자칫 사유화되기 십상인 권력을 공공재로 변환시킨다. 법치주의는 한편으로 국민주권주의를,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통제를 양축으로 삼아 야만국가의 권력 사유화를 예방하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꾀해왔다. 5·18은 체제를 전복하거나 반대했다기 보다는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불의한 집단에 맞서 민주공화주의를 회복하려는 시민운동이었다는 점에서 명백히 민주화운동이었다.

518광주학살은 폭력을 독점한 국가가 위임된 권력을 사유화했을 때 야만성이 얼마나 극악하게 나타나는지 그 민낯을 숨김없이 드러낸 전형적인 사건이자, 동시에 이에 맨몸으로 저항하며 야만국가를 민주공화국으로 돌려 세우려 한 위대한 시민항쟁이었다. 탄압에 대한 저항을 넘어 호혜와 연대의 자율공동체를 실현한 대안행동이기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2017년 촛불시민항쟁은 518의 연장선에 있으며 이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이제 87년 헌법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시민적 통치질서를 만드는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4-2. 불완전한 민주화, 사회적 혜게모니의 불변

6월 항쟁 이후 쟁취된 형식적 민주주의는 보통선거권, 주기적 선거, 복수정당 간의 경쟁을 통한 정부구성 등 최소주의적(입구단계의 기회균등) 관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필요한 기본적인 제도요건을 갖추게 하였다. 그러나 모든 시민이 실질적으로 정치과정에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최대주의적(출구단계의 기회균등) 요건을 전제한 실질적 민주주의는 아직 요원하다. 형식적 민주주의가 주로 자유주의, 또는 공리주의적 이념과 가치를 토대로 1인 1표의 정치적 평등에 입각하여, 선거로 선출된 지도자로 하여금 인민주권실현의 대리인으로서 정치공동체에 관한 제도구축과 운영을 맡는데 비해, 실질적 민주주의는 참여민주주의와 직접행동민주주의를 토대로 정치적 형식적 평등을 넘어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평등을 보장하고 인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출구단계의 균등을 꾀하는 체제이다. 원래 제1차 인권혁명으로 일컬어지는 프랑스혁명의 전개과정에서 확인되듯이, 형식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는 서로 별개의 발전단계가 아니었다. 그러나 현실의 역사적 전개는 혁명의 유산이 유산계급에 의해 절도당하면서 정치공동체와 경제공동체가 기형적으로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따라서 정치민주화와 경제민주화가 서로 조응하지 못하는 형국이 빚어진 것이다. 형식적 민주주의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4-3. 2018체제의 이중과제

해방 이후 오랜 동안의 한국사회에서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선거제도와 복수정당제도를 갖추었다고는 하지만, 막걸리선거, 고무신 선거, 금권선거 등으로 상징되는 부정부패비리에 의해 의회와 정부가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단지 억압과 통제의 반민주적 독재권력으로 존재했던 경험을 겪기도 했다. 이는 인권과 민주주의 주체역량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피할 수 없게 한다. 로버트 달(Robert Dahl 1998)에 의하면, 시민들의 효과적인 정치참여가 투표의 평등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계몽이 이뤄지며, 나아가 참여가 보장되고, 유권자들의 정치통제가 가능해 진다고 한다. 이 기준이 충족되면 민주주의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고, 힘 있는 소수의 이익을 위해 힘없는 다수가 희생되는 상황이 해소된다. 실질적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이 동등하

고 효과적인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절차가 갖춰져야 비로소 발전할 수 있다. 나는 형식적 민주주의가 자유주의(성과보상체계/경쟁적민주주의)와 공리주의(다수결민주주의)의 틀에 갇혀 일정한 역사적 진보성의 수명을 다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형식적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그 효용가치를 평가절하 하는 것이 아라, 그 이중성에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한편으로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체만으로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왜곡하거나 질곡화 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의 한국사회는 중대한 체제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 지난 1987년 6월항쟁 이후 모색된 87체제가 이제 2018체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87년 체제의 핵심 가치가 형식적 민주주의의 확립, 즉 법치주의의 실현이라고 한다면, 과연 2018체제의 핵심 화두는 무엇일까. 나는 그것을 실질적 민주주의의 확립, 곧 민주주의의 내면화라고 말하고 싶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실현이 되겠다. 87체제는 민주정부 10년 동안 그나마 불안정하게 도모되었고, 심각한 시행착오도 노정되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역진이 87체제의 유제를 온존시키고 말아서, 2018 체제를 맞는 우리는 불가피하게 두 개의 과제를 동시에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시민권적 요구인 권리에 대한 민주적 통제로서의 법치주의 구현과, 사회권적 요구인 보편적 복지의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시민권의 공고화와 시민권의 확대라는 이중과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다. 나는 민주주의의 내면화의 핵심가치는 ‘인권’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자면 인권을 중심으로 한 가치공동체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따라 이제 87체제의 극복과 2018체제의 확립이 좌우될 것이다. 곳곳의 지역과 시민공간에 인권의 가치공동체를 구축하는 일은 곧 민주주의의 참호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 및 국가는 다양한 가버넌스의 확장으로, 시장은 공공영역의 확장과 사회적 책임의 강화방향으로, 사회는 다양한 층위에서 공동체성의 복원으로 각각 나아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4-4. 외국사례를 통해 본 국회광주특위의 한계

4-4-1. 독일

독일은 나치청산과 구동독정권의 청산 등 두 차례의 청산이 있었다. 나치에 대한 청산은 50여년간에 걸쳐 가혹하리만큼 철저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들어 히틀러시대의 경제성장을 칭송하고 국가 간의 전쟁은 자연스런 일로 범죄시해선 안 된다는 극우적 목소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구동독정권의 불법행위에 대한 청산은 1992년 9월 24일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의 불법청산을 위한 제1차 법률’이 연방의회에서 제정되면서 본격화되었다. 통일독일은 우선 동독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증거수집, 형사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검찰조직 외에 특별기구를 구성하였다. 1990년 10월 3일 통독 즉시 베를

린고등검찰청에 ‘정권범죄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연방의회가 전폭 지원토록 하였다. 정권 범죄특별수사본부는 1992년 4월경까지 약 680여건의 총기사살사건을 비롯해 구동독 국가공 안부 촉탁살인사건 5건, 기타 선거부정사건, 판검사의 법률왜곡사건 등 도합 1130건의 정권범 죄를 조사하였다.

피해자의 법적 구제는 1990년 8월 31일 통일조약을 통해 동독정권 집권시 동독법원의 형사 판결이나 강제처분, 수사 중 헌법과 법치주의 위반사례를 모두 취소하고 보상하는 복권 및 파기제도를 통해 이뤄졌다. 재심절차 없이 ‘헌법상 정치적 기본권의 행사로 인해 형사상 유죄선 고를 받은 경우’나 재판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법치주의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등에도 기왕 의 확정판결 자체를 취소하는 복권, 파기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1992년 9월 25일 독일은 ‘반법치국가적 형사소추처분으로 인한 피해자의 복권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법치국 가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형사판결과 감호시설 수용명령을 취소토록 하였다.

4-4-2. 남미

80년대 들어 남미 군사독재정권이 차례로 붕괴되면서 군사정권 아래 이뤄진 납치, 고문, 강간, 살해 등의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및 처벌논의가 대두되었다. 그러나 소위 국민적 화해라는 미명 아래 국가적 불법행위에 대한 사면법이 광범위하게 제정, 실시되면서 사실상 불법청산은 형애화되고 말았다. 수만 명의 실종자를 냈던 아르헨티나는 군사정권이 국민을 향해 벌인 ‘더러운 전쟁’을 ‘전복행위와 테러리즘에 대항하는 전쟁’이라고 호도하면서 ‘국가화해법’을 공포하여 모두 사면하고 관련문서를 파기하려고 했다. 그러나 1983년 국민투표로 선출된 알폰신 대통령은 과도정부의 이러한 사면령을 무효화하고 1976년에서 1983년에 이르는 군사 정권 관련자들을 재판에 회부하도록 했다. 또한 실종자들에 대한 독립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984년 동위원회는 납치, 살인, 실종 등의 진상을 밝히는 ‘눈까마스 Nunca Mas(=never again)’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러나 1986년 이후 군부의 압력으로 인권침해사법에 대해 60일 이내에 재판에 회부하도록 제한하는 Punto Final 법을, 1987년에는 타당한 복종에 관한 법을 만들어 중령 이하 군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그들의 상관에게 복종한 것으로 간주하여 무죄로 추정하고 30일내에 반증이 없으면 중령이상 고급장교들에게도 이 추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불법청산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알폰신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된 메넴은 1989년 90년 사이에 기소되었던 전직 대통령과 군부지도자를 사면하고 말았다.

칠레는 1978년 군사정권 스스로 1973년 군사쿠데타 이후 자행된 인권침해 범죄자에 대한 사면법을 제정하였다. 1990년 새로 취임한 아일원 대통령은 ‘진실과화해위원회’를 만들고

비록 사법기능은 없을지라도 공정한 배상과 인권침해재발을 막을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을 권고하도록 하였다. 1991년 군사정권의 인권침해실태를 담은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1992년 ‘배상과 화해를 위한 국가기구’가 설립되어 희생자와 가족에게 집과 치료, 교육을 지원하는 물질적 배상을 개시하였다.

우루과이는 1973년부터 지속된 군사정권이 1985년 퇴진하고 상귀네티 대통령의 민간정부가 들어섰으나, 군부의 압력으로 ‘유야무야법’이라고 불리우는 군부탄압자에 대한 ‘사면법’을 통과시켰다. 이 사면법 제1조는 1985년 이전에 군과 경찰 및 그들을 위해 활동한 민간인들에 대해서까지도 정치적인 이유로 혹은 독재기간동안 집권기관에 의해 지시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국가형별권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다. 여론의 반대가 일면서 1989년 국민투표까지 부쳐졌으나, 어렵게 확보한 민주정부가 군부에 의해 다시 파괴되느니 과거청산보다 봉합이 낫다는 국민의 선택에 의해 과거청산은 사실상 무산되고 말았다.

국가가 자행한 인권침해를 청산하는 일은 쉽지 않다. 국민적 화해니, 과거를 잊고 미래로 가자는 화려한 수사에 종종 정의가 말살되고는 한다. 진상조사-가해자처벌-피해자배상이라는 상식적인 절차가 맥락도 없이 묵살되고 겨우 돈으로 입막음하려는 기도가 끊이질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철저한 진상조사가 우선이다. 법에 근거한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유엔 등과 연계시켜 공신력을 확보하도록 한다. 둘째 불법한 과거의 유죄판결을 취소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독일처럼 재심제도 없이 유죄판결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특별법제정이 필요하다. 셋째 민간인학살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관하여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인권침해범 죄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의무화하도록 해서 검찰의 기소재량권 오남용사례를 막아야 한다.

5 | 마무리

헌법은 주권자와 그 주권을 위임받은 국가 사이에 맺은 사회계약이다. 하다못해 사인 간의 계약서조차도 계약 당사자는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 권리-의무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물며 주권자의 권리장전이랄 수 있는 헌법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 헌법은 민주 헌정질서를 표방하면서도 늘 정치적 대리자에게 위임하여 제정해왔다. 심지어 6월민주항쟁을 통해 쟁취했다고 하는 87헌법조차도 전문가 몇몇이 밀실에서 그 열개를 잡았고 주권자는 단지 사후적으로 형식적 추인만 하고 마는 한계를 가졌다. 이제 2018체제가 요구하는 헌법은

국민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완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내용이 거니와 절차와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하게 되는 것이다. 추첨이든 참여자모집을 통해서든 전국적으로 (가칭)헌법개정국민회의를 조직하고 의제별 권역별 영역별 라운드테이블을 마련하여 헌법개정안의 골격을 마련해야 한다. 시간을 충분히 갖고 숙의민주주의 방식으로 성안해 나가되, 전문가는 촉진자(facilitator)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 국민발안의 형식으로 최종확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주공화국의 시민성은 더욱 공공화 될 것이며 이는 결국 민주헌정질서를 강력하게 떠받치는 시민역량으로 작용할 것이다. 518정신은 명실상부하게 시민을 국가의 주인으로 내세워 야만성을 타파한 공정과 공평이 넘쳐흐르는 정의로운 국가, 호혜와 연대에 기초한 시민의 자주적 공동체를 오늘 이 땅에 새로이 세울 것을 요청하고 있다. 518민주항쟁이 개정헌법 전문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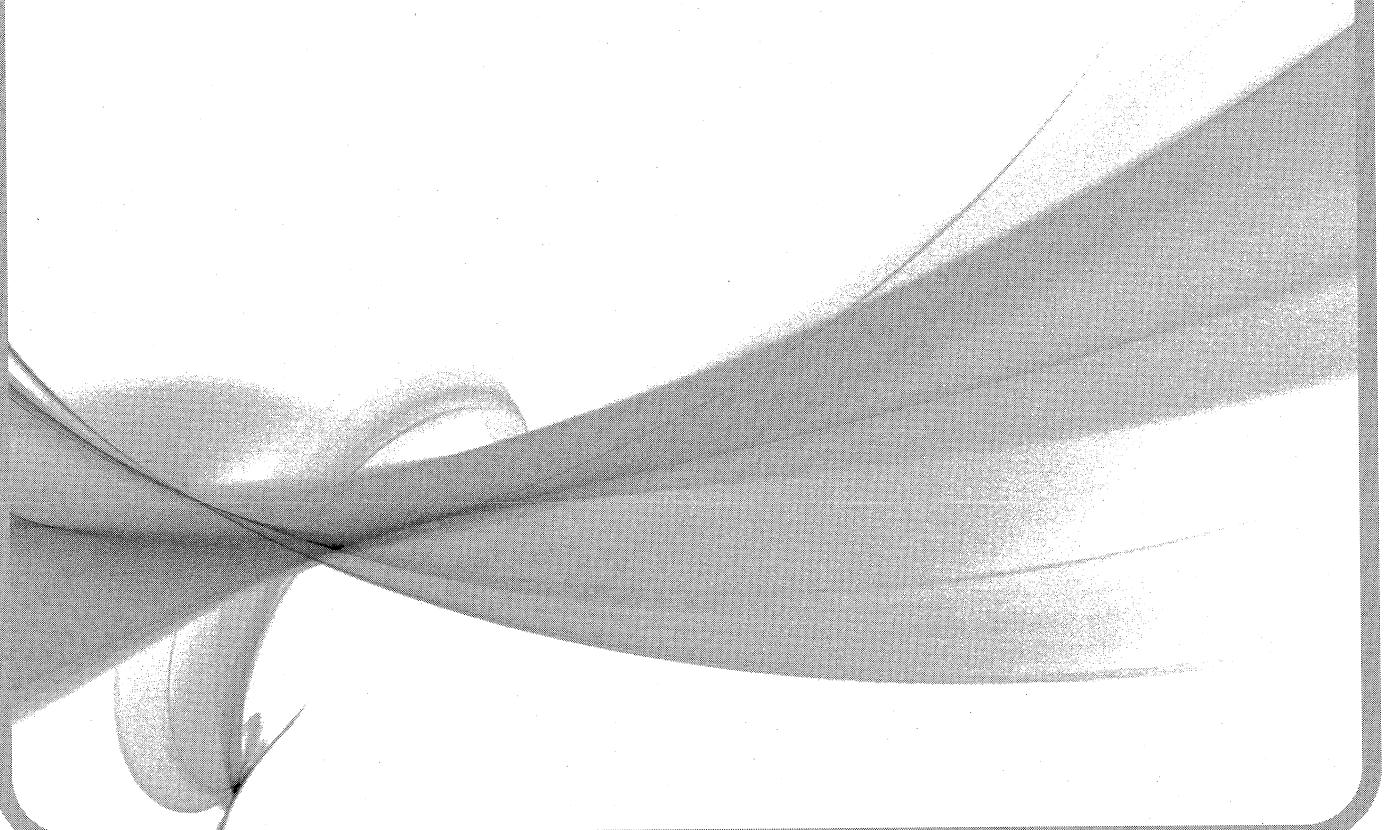
〈참고문헌〉

- 세계인권선언
- 대한민국 헌법
- 복지국가발전을 위한 한국민주주의 개선방향(고원, 계간 민주 2011 가을 창간호)
- 민주주의의 민주화(최장집, 후마니타스 2006)
- 광주항쟁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하라(유남영, 신동아 1993.5.)
- 518특집 법적처리 어떻게 진행돼 왔나(이재의, 월간예향 1995.5.)
- 법적 청산 외국사례(김형태, 월간예향 1995.5.)
- 국정조사보고서(안)(국회광주특위 1990.2.)

• 토론문 1 •

송선태 정무비서관

전 국무총리실



토론문 1

송선태 정무비서관(전 국무총리실)

1 | 국회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조사 특별 위원회 (광주특위)의 현재적 평가

(1) 헌법기관 (국회)에 의한 최초의 합법적 공식조사

- 보고서 채택 못한 미완의 조사

(2) 청문회 등 TV 생중계 등으로 정치 사회적 금기 해금 계기

-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의 기억할 의무

(3) 향후 6차례의 5·18 조사에 대한 방향타 역할

- 규범적 조사

(4) 파레시아 (파르헤지아, Parrhesia)의 시대적 요청 불발

(5) 현대사 사건 조사의 반면교사

2 | 국가기관의 5·18 조사일지

(1) 국회 광주특위 조사

(2) 검찰조사

1) 서울지검 형사 5부 (부장. 김승규)

- 1992.12월 5·18 구속자 일동 전두환, 노태우(이하 전, 노) 등 58명 고소

- 내란, 내란 목적 살인 혐의의 증거 찾을 수 없다며 전원 무혐의

2) 서울지검 공안 1부 (부장. 장윤석)

- 1993.07.19 정승화, 장태완 등 12.12 피해자 22명 전, 노 등 34명 고소

- 1994.05.13 정동년 등 322명 고소인이 전, 노 등 5.18 진압 당시 대대장급 이상 신군부 35명을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고소
- 1994.05.13 5.18 국민 위원회 김상근 외 293명 전두환 등 고발
- 1995.07.18 장윤석 부장 공소권 없음 발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전, 노 등 12.12 관련 34명은 국가 발전에 기여, 법정에 세울 경우 국가적 혼란 야기 등을 이유로 기소 유예 (군 형법상 군사 반란 사건으로서 반란죄 인정)
- 정호용 등 4명 5.18 관련자 공소시효 경과로 공소권 없음

3) 서울지검,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 조사 (본부장 최환 지검장)

- 1995.07.18 서울지검 공소권 없음 발표
- 1995.09.22 새정치국민회의, 민주당 5.18 특별법 발의
- 1995.10.19 박계동 의원 노태우 비자금 2,300억 폭로
- 1995.10.25 김대중 노태우 비자금 20억 수수 사실 기자회견
- 1995.11.16 노태우 구속
- 1995.11.24 김영삼 대통령 5.18 특별법 제정 지시
- 1995.11.30 5.18 특별수사본부 구성
- 1995.12.03 전두환 구속
- 1995.12.19 5.18 특별법. 현정 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등에 관한 특례법 통과
- 1995.12.21 전, 노 등 16명 기소
- 1996.03.11 첫 공판
- 1996.08.26 1심 선고
- 1996.11.14 최규하 강제 구인 (답변 거부서 낭독)
- 1996.12.16 항소심
- 1997.04.17 대법원 최종심 전두환 무기징역, 노태우 17년 형 확정
- 1997.12.22 대통령 특별사면 석방

(3)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 (2005-2007)

- 조사 범주 12.12: 서훈 치탈
5.18: 전남도청 앞 집단 발표
- 지휘권 이월화
- 민간인 살상 사건 (지원동 미니버스 총격사건)

(4)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진화위, 과거사위)의 조사

- 1) 5.18 자료수집증점, 51.8 조사 미 개시
- 2)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2005.5.3 국회통과)
 - 2005.12.1 위원회 출범. 2010.6.30 4년 2개월 만에 조사 마무리, 활동 종료
 - 2005년 1년 동안 10,860건 접수
2006.4.25 조사개시 ~ 종료 시까지 11,172건 조사 마무리
 - 문현, 자료 토, 신 38인 참고인 진술청취, 현장조사 (실지조사)
 - 피해사실인정부분:
국가의 공식사과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국가에 권고
 - 종합보고서 보고: 국회, 대통령 (2010.12.31 해산)
 - 역대 위원장: 송기인, 안병욱, 이영조
※ 과거사법 제 40조 과거사 연구재단 (2014.12.30 법 개정 반영)
※ 일부 개정안 계류 중

(5)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2017.9.12 ~ 2018.2.10)

- 헬기의 사격 및 전투기 광주 출격 대기 의혹 조사
- 향후 조사 불가피

(6)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법에 의한 조사 (예정)

- 2018.9 조사개시
- 현재 시행령(안) 등 준비
- TF 운영

3 | 국가 기관의 5.18 조사에 대한 평가 및 제언

(1) 지속적인 실체적 진실 규명과 상황의 재구성을 통한 5.18 정사 집필

- 1) 심각한 자료 왜곡, 관련자들의 증언거부, 고령화 등으로 치명적인 진실 왜곡
- 2) 안기부, 육군본부, 국방부, 보안사, 투입 군부대, 해군, 공군, 합참, 연합사, 미 태평양 사령부, 미 국무성 등 추가 조사 필요

(2) 5.18 왜곡에 대한 단호한 대처

- 반 나치법,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법, 차별 금지법 등 유사 입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3) 진실 증언 국민운동 (5.18 파레시아운동)

(4) 국가적 차원의 연구지원 (과거사 연구재단 활성화 등)

4 미 해결 5.18 과제

- 발표 명령체계 및 책임자
- 민간인 학살
- 행방불명자와 암매장
- 지휘체계 이원화
- 자료 왜곡
-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 미국의 역할
- 고문 수사 및 5.18 내란 조작 실상
- 북한군 특수부대 600명 투입 설 등 5.18 펜웨이
- 광주문제해결 5대 원칙 결정과정
- 진압작전의 총체적 실상 등

5 5.18 왜곡 세력의 시각

(1) 80 ~ 87년 5.18은 무장 폭동에 의한 내란 사건

(2) 88 ~ 95년 5.18은 민주화 운동

(3) 박계동과 김영삼의 코미디에 편승한 5.18

(4) 386 (정치권력과 사회 장악) 세력의 야합으로 5.18 신화 조작

(5) 북한 특수군 600명 활동 검찰 수사 최종 보고서에 수록

(6)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들, 5.18에 글종

6 | 토론 결여

(1) 발제자의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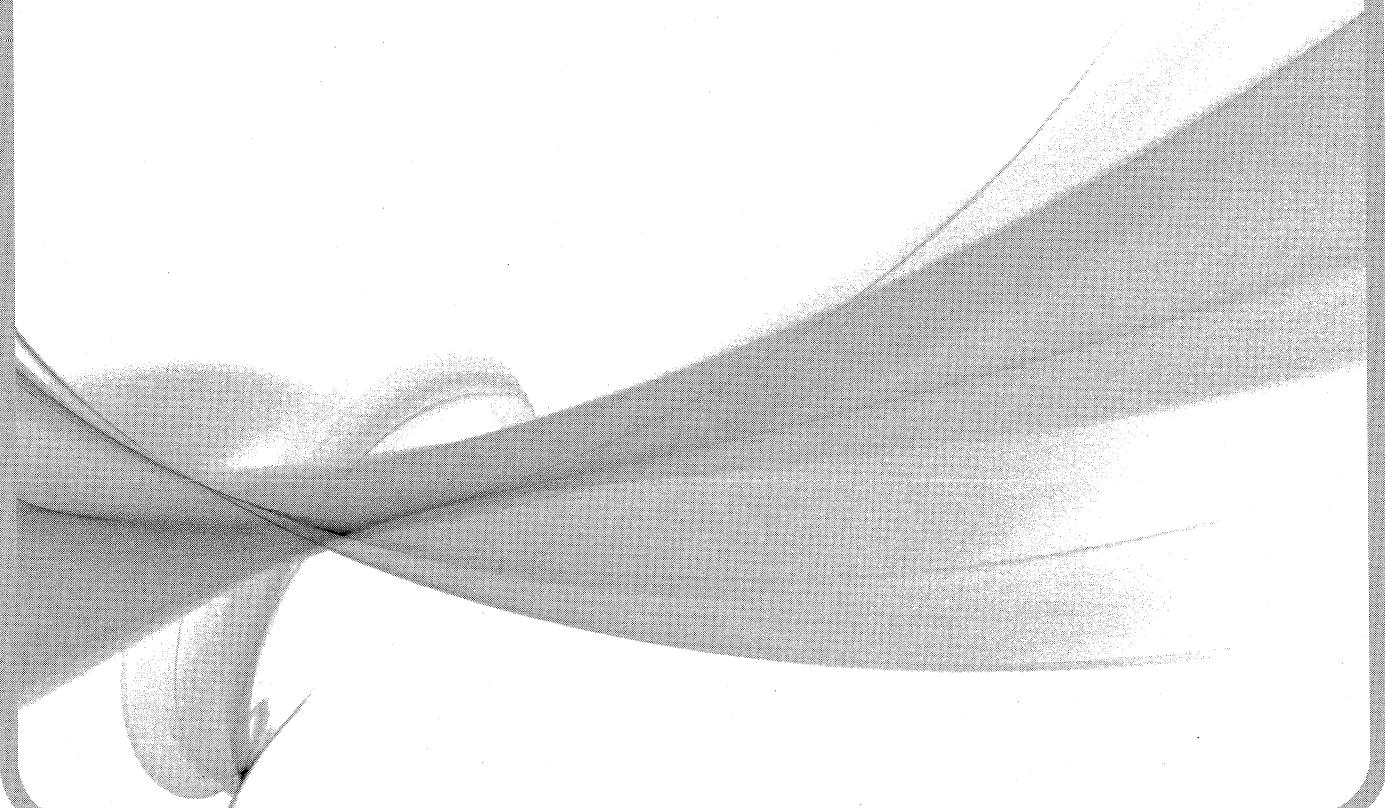
- 한국의 현 시기 형식적 민주주의는 자유주의 (성과 보상 체계, 경쟁적 민주주의) 와 공리주의 (다수결 민주주의)에 갇혀 역사적 진보성의 수명을 다했다.
- 2018 한국사회는 중대한 체제 전환 시기 도래 (1987 체제에서 2018 체제로의 전환기)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 민주주의 내면화가 화두

(2) 토론 의견

- 국가 폭력의 과거사에 대한 단호하고 지속적이며 엄정한 정리가 실질적 민주주의의 내부 동력 -> 과거사 재단의 활성화 촉구
- 대동정신 (민주, 인권, 평화, 자주, 통일)을 염원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반영
-> 미래 한국 민주주의의 지향점 설정
※ “5.18 민주화운동” 용어는 민화위, 민정당, 민자당이 제안한 명칭임을 기억해야 함

• 토론문 2 •

이재의 박사



토론문 2

이재의 박사

1 팩트 체크

① “시위대가 점차 늘어나면서 공수부대원이 시내에서 시위진압에 나섰으며 18일 오후 1시부터 무차별 진압작전이 이루어졌는데...” (1-3.경과)

* (Fact) 5월 18일 오후 4시부터

② “(5월 21일) 계엄군은 정오 경 도청에서 시위대에 조준사격을 하였으며...” (1-3.경과)

* (Fact) 계엄군은 오후 1시경

2 발제문에 대한 의견

① 객관적이고 정제된 사실 중심으로 청문회의 실상을 깔끔하게 정리하였음.

②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로 국회 ‘여소야대’ 상황에서 의욕적으로 시작한 청문회가 ‘3당합당’ 등 보수연합의 정치상황으로 변화에 따라 어떻게 용두사미가 되었고, 급기야 진상규명이 실종되어, ‘피해보상’으로 변질돼버렸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음.

③ 결국 국회 광주특위는 조사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해 특위활동 결과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는 점은 특히 중요함. 청문회로부터 30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 다시금 ‘5·18 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그때 해결하지 못한 과제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엄중한 역사 현실’을 새삼 되새기게 하는 교훈.

④ 발제는 광주특위의 4개 소위원회(한미관계, 자료검증, 현장검증, 특별법제정 및 사후대책) 구성과 그 활동을 소개함으로써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청문회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점은 높게 평가.

- ⑤ 1988년 열린 청문회는 5.18 이후 40여 년 간 지속돼온 진상규명 과정에서 볼 때 많은 한계도 있었지만,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본질적인 쟁점들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음.
- ⑥ 다만 발제에서 아쉬운 점은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 57명(70명 중 13명 불출석)의 증언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쟁점을 요약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빠졌다는 점. 만약 주요 증인들의 증언과 상충되는 주요 쟁점을 구분해서 소개했더라면 청문회의 성격과 역사적 의의, 그리고 한계를 훨씬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음.
- ⑦ 또한 최근 밝혀진 바대로 사실상 청문회를 막후에서 이끌다시피한 국방부의 ‘511연구위원회’ 실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도 아쉬움.

3 | 청문회에서 드러난 쟁점들

- 본 토론자는 발제문에서 나타난 위와 같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핵심쟁점을 중심으로 주요 증인들의 엇갈린 증언, 그리고 그런 쟁점이 갖는 함의에 대하여 토론자의 의견을 제시코자 함.
- 청문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5.18을 둘러싼 핵심 쟁점들이 대부분 거론되었고, 이런 쟁점에 대하여 가해자 및 피해자 등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거나 관련이 있는 증인 57명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음.
-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상당수의 가해자 측 증인들은 청문회 증언을 번복한 사례 빈발. 특히 1996년 검찰수사와 5.18재판에서는 자신의 청문회 증언을 번복하고 정반대의 진술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음. 강제력이 없는 청문회에서 이들 증언의 신빙성을 크게 신뢰하기 어려웠음.(예: K-공작계획 등 언론조작과 탄압을 대간첩작전차원에서 주도했던 이상○, 허문○ 등은 청문회 위증혐의로 고발됨)
- 이 쟁점들은 1994년 검찰수사에서 상당부분 진상이 규명되었고, 12.12, 5.18재판(1996~97)에서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죄’ 등 유죄 판단이 내려졌음. 하지만 검찰은 511연구위원회가 제시한 ‘자위권발동’ 등의 핵심쟁점에 대한 논리적 한계에 간혀 ‘발포 명령’을 규명하지 못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문회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였음. 보수정권이 집권하자 미진한 사법처리의 빈틈을 비집고 5.18왜곡선동 세력이 집중적으로 “5.18 뒤집기”를 시도함.

〈5.18청문회의 쟁점 사항들〉

- ① 과잉진압과 과격시위, 유언비어
- ② 발포명령과 지휘체계 이원화
- ③ 자위권 발동으로 포장된 집단발포(시민군 선제무장설)
- ④ 교도소습격의 진상
- ⑤ 민간인 살상과 암매장, 행방불명자
- ⑥ 5.27폭도소탕작전의 실상
- ⑦ 김대중의 선동과 계엄당국의 사건 조작
- ⑧ 미국의 책임
- ⑨ 기타(북한군 개입)

4 | ‘511연구위원회’의 실체와 역할

○ 511연구위원회(5.11분석반) (한겨례, 2017.5.17.)

1988년 4.26총선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만들어진 뒤 야3당은 ‘광주문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국정조사 방침에 합의. 곤혹스러워진 민정당은 88년 5월 9.10일 당정대책회의를 열어 ‘야당이 국회광주사태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결의한다면 이에 참여’한다는 입장으로 선회. 다음날인 5월 11일 국회 청문회 대비하여, 보안사령부 주도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참여하는 511연구위원회를 비밀리에 설립.

법적 근거 없이 1년6개월 동안 가동(1989.12까지 총 32회 전체회의)하면서 안기부, 민정당 등과 청문회 대응책 협의. 집단발포 등 청문회 쟁점사항 답변을 지휘함. 5.18관련 군 자료를 광범위하게 취합하여 문서를 조작하고, 왜곡논리를 생산하여 청문회에 나서는 증인들에게 제공함.

○ 511연구위원회는 무장난동의 실태, 자위권행사의 불가피성, 실탄분배시기와 과정 등 예민한 쟁점에 대한 군의 대응논리 및 예상 질문과 답변서를 치밀하게 작성. 필요에 따라서는 군에 불리한 계엄군의 작전 관련 문서 자체를 조작하거나 폐기하고, 사실과 다른 왜곡 논리를 생산하는 등 5.18왜곡에서 원천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이 보안사 자체 문서에 의해 밝혀짐.

- 511분석반의 5.18왜곡논리는 청문회-12.12, 5.18검찰수사 당시 신군부의 대응 핵심논리로 이어졌고, 97년 대법원 유죄판결의 기본 프레임이 되었으며, 사법적 쳐별이 끝난 뒤에도 왜곡선동세력들은 북한특수군 개입 주장 등 극단적인 5.18폄훼 논리로 확장되었음.
- 청문회에서 가해자 측 증인들은 당시 '511연구위원회'가 총괄적으로 사전 준비한 청문회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미리 짜맞춘 각본에 제시된 내용만 증언하였음. 청문회는 막후에서 511연구위원회가 준비하고 총괄지휘함으로써 사실상 511연구위원회가 제시한 '511프레임'에 갇혀버린 형국.
- TV를 통해 생중계로 가해자들의 청문회 증언을 청취한 수많은 국민들은 5.18의 실체적 진실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511프레임'을 통해 5.18을 이해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음.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은 5.18의 극히 일부만 볼 수 있었고, 가장 중요한 진실은 '511프레임'에 아직도 갇혀 있음. 의도치 않은 결과지만 청문회가 5.18진실을 왜곡하고 은폐시키는데 기여한 꼴. 1997 재판결과도 마찬가지. 향후 5.18진상규명특별법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임.

5 | '511프레임', 왜곡 사례

① 5.18 초기 충돌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이 1988년 5월 20일 민화위에 서면 증언한 내용("계엄군이 과잉진압이 직접적 원인의 하나임"을 시인)을 511분석반이 청문회에서 수정하여 발언토록 유도 ("젊은 군인들이 격렬한 난동 저지 임무 수행. 시위학생 연행 중 다소 과민한 충돌. 쌍방간 부상자 발생. 악성유언비어 확산되면서 감정 자극"). 이에 따라 이희성은 청문회에서 민화위의 증언 번복함.

② 발포 문제

○ 발포 원인 및 명령(511주장)

가. 시위대의 과격시위(공공시설 파괴, 무기 및 탄약탈취, 교도소공격 등)

나. 합법적 자위권 행사

다. 발포명령자 없음. (5.21. 19:30 자위권보유 천명)

※ 실제상황

- 가. 계엄군의 과잉진압에 대한 시민들 분노가 원인
- 나. 자위권 천명 이전에 집단발포(5.20. 23:00 광주역, 5.21. 13:00 도청앞)
- 다. 비공식 지휘라인을 통해 발포명령 결정, 전달, 실행(조준사격, 헬기사격)

○ 시위대 선제 무장(511주장)

- 가. 5.19. 15:15 CBS점거 M16 1정, 실탄15발 탈취(전교사상보 p10)
- 나. 5.20. 23:00 광주세무서 무기고 CAR 17정 탈취(전교사일지 p9)
- 다. 5.21. 08:00 나주 반남지서 카빈 3정 탈취(전남도경 상황일지)

※ 실제상황

- 가. CBS M16 곧바로 이상 없이 회수(전교사 정보일지 16:20회수;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 16:30 회수; 계엄사 ‘계엄상황일지’ 16:52 회수)
- 나. 광주세무서 CAR 17정은 모두 탄창과 실탄이 없는 빈총 확인(‘2군계엄상황일지’,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
- 다. 반남지서 피탈시각 5.21. 17:30(‘나주경찰서 관내 총기 및 탄약류 피탈상황보고’ 1980.6.3.작성, ‘5.18사건 수사기록’ 117권 중 94권, p.103470)

③ 지휘체계 이원화

- 공식지휘체계 : 계엄사령관 - 2군사령관 - 전교사령관 - 31사단장 - 공수여단장
- 비공식 실제지휘 : 보안사령관 - 특전사령관 - 공수여단장(발포: 결정 → 전달 → 실행)

○ 작전통제권 전환시점 및 명령근거(511주장)

- 가. 공수부대 작전통제권 전환시점(5.21. 16:00, 31사단 → 전교사)
- 나. 집단발포 시점(5.20. 3공수, 광주역; 5.21. 13:00 11공수, 도청앞)
- 다. 31사단장이 발포책임(5.21. 16:00 이전)
- 라. 작전통제권 전환 근거 : 전교사 전투상보(일지)

※ 실제상황

- 가. 7,11,3공수여단이 31사단에 배속·작전통제될 때는 명확히 명령 근거가 밝혀진데 반해 ‘지휘체계이원화’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5.21. 16:00 31사단에서 전교사로 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명령 근거가 없음. 단지 유일하게 ‘전교사 전투상보’에 명령근거 없이 ‘일지’ 형식으로만 기재된 기록을 근거로 하고 있음.

나. ‘전교사 전투상보’가 원본인지 조차 불분명함. 1988년 국회 청문회 대비용으로 511 연구위원회에서 전교사작전상황일지, 전교사전투상보, 특전사전투상보, 20사단전투 상보, 31사단전투상보를 종합 정리하여 ‘작전일지’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추정.

〈결론〉

- 511연구위원회는 실제상황과 달리 5.18상황 자체를 왜곡하였고, 이를 위해 민감하게 쟁점이 되는 부분의 군 문서 자체를 조작, 폐기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511연구위원회가 만든 “자위권” 논리는 검찰수사(1995)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음. 검찰은 발포명령자 규명을 아예 포기해버리고 ‘자위권 발동’에만 수사의 초점을 맞춰 기소했으며, 재판부 역시 ‘자위권’ 논리에 포섭된 채 판결함으로써 오늘날까지도 5.18의 실체적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채 봉합된 상태.
- 그밖에도 청문회에서 쟁점이 됐던 비상계엄전국확대의 당위성, 지휘체계이원화, 교도소습격사건, 민간인살상, 암매장 등은 오늘날 왜곡이 집중되고 있는 사항들인데, 이런 쟁점들 역시 큰 틀에서 511프레임에 갇혀 있는 상태.

6 | 청문회가 남긴 과제

① 511프레임에 대한 심도 깊은 인식 필요

- 511연구위원회 활동규명 및 511프레임(왜곡논리)의 분석, 비판
- 511프레임이 진상규명과정(검찰수사, 재판, 2007국방부과거사위원회 조사 등)을 거쳐 역사적으로 공인화되는 Process 규명

② 5.18 진상규명의 기본 방향

- 511프레임의 왜곡논리를 극복할 새로운 문서증거 확보
- 피해자들의 증언(각종 증언관련 기록들)과 불일치하는 사항들 검토
- 증인 소환에 대한 강제조항 특별법 보완
- 5.18문제 해결의 ‘5대원칙’ 적용(불처벌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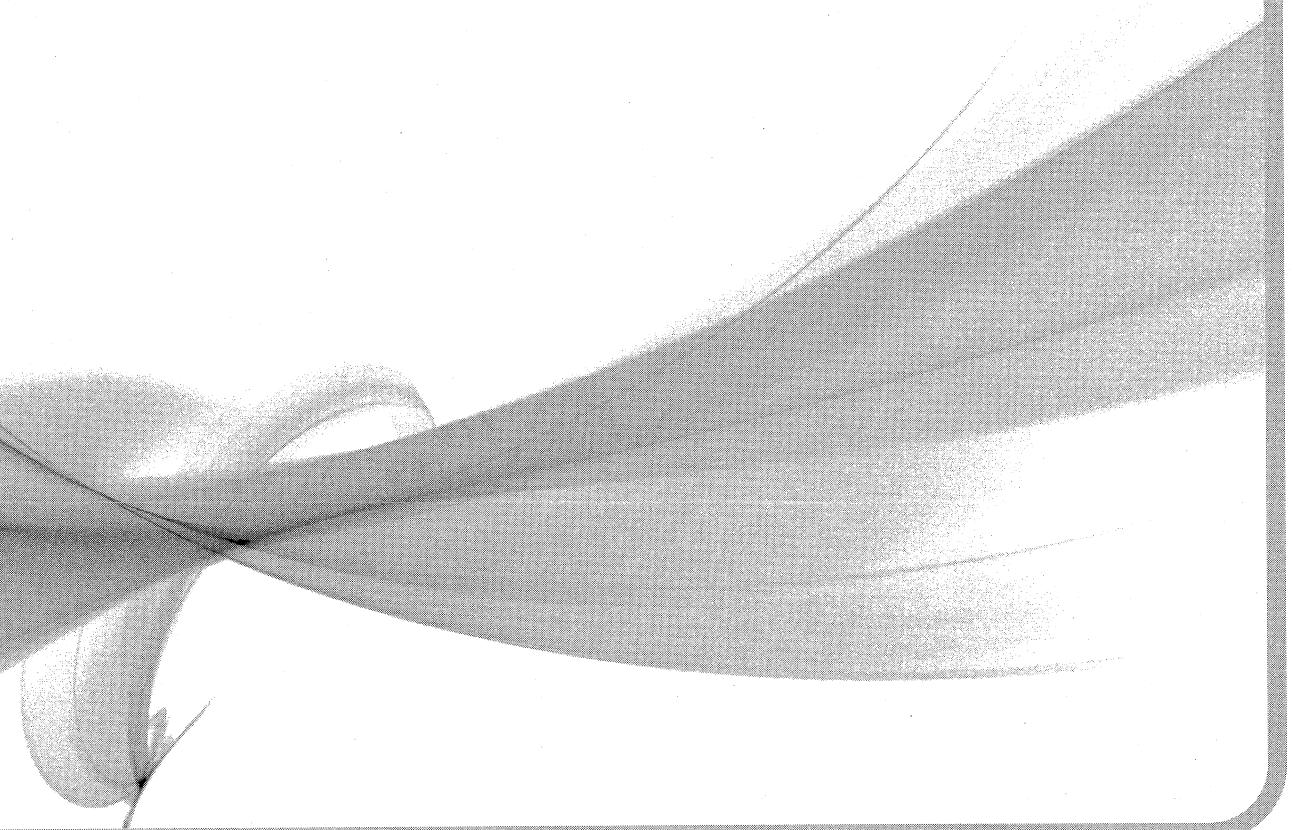
③ ‘5.18’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교육

- 5.18정신 헌법 전문 반영에 따른 사후 조치들
- 5.18의 팩트규명을 위한 원천자료 발굴 및 연구활동 강화
-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확산을 위한 정규 교육과정 의무 반영
- 정치상황 변화에 흔들리지 않게 제도적 장치 강화, 왜곡논리 차단

• 토론문 3 •

홍지은 변호사

법무법인 지음



토론문 3

홍지은 변호사(법무법인 지음)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역사 왜곡과 이에 대한 법적 대응

1 국회 5·18 광주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위원회의 한계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38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손해배상을 외치고 있습니다.

발표자의 지적대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종국적 해결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① 진상을 규명해서 ② 책임자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과 이를 전제로 ③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④ 손해배상, ⑤ 기념사업 등의 조치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38년 동안 이루어진 것은 1995. 12. 21.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절차만이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진상규명’은, 1988. 11. 시작하여 그 다음해인 1989. 2. 갑자기 중단된 ‘국회 5·18 광주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위원회’(이하 ‘5·18 국회광주특위’)가 조사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한 채 중단되면서, 30년 동안 당시 발표명령의 최종 책임자조차 명시적으로 규명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위와 같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진상규명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지난 과오(過誤)의 결과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심각한 역사 왜곡과 이에 기한 피해자들 및 유가족들에 대한 온·오프라인 상의 무차별적인 명예훼손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 |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역사 왜곡 경위

가. 1980. 5. 신군부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역사 왜곡의 시발점은 1980. 5. 당시 신군부입니다.

10·26 사태 이후 보안사령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1980. 5. 광주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광주에 무장한 북한군(또는 국내 암약한 북한 간첩들)이 침입하여, 광주시민을 선동하고 국가반란을 피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언론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유포하였고, 이것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구히(?) 흘러오고 있는 역사 왜곡의 기본 뼈대가 되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신군부의 날조 및 비방 행위를 바로 잡을 수 있었던 최초의 기회가 바로 1988. ‘5·18 국회광주특위’였습니다. 그 전까지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우리 사회에서 마치 야사(野史)처럼 떠도는 이야기에 불과했다면, ‘5·18 국회광주특위’는 최초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하여 국가로 하여금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만드는 의제로 선포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5·18 국회광주특위’는 당시 집권세력의 핵심을 이뤘던 신군부 출신 인사들과 국방부가 청문회 출석 증인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진상규명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고, 결국 조사보고서 조차 채택하지 못한 채 3개월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물론, ‘5·18 국회광주특위’ 이후에도 1995. 검찰 및 국방부 조사, 1996.~7.의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재판, 2007.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등을 통하여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진상규명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의 핵심적 과제라 할 수 있는, 헬기 사격 등 계엄군의 광주시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살상행위에 관한 경위 및 그 책임자 규명이 끝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음으로써, 신군부가 날조한 ‘북한군 개입설’이 3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극우 정치 세력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 사이에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0670 판결

2008. 2.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하여 ‘북한군 개입설’의 전 국민적인 확산 과정에 기름을 부은 것은 대법원이 2012. 12. 27. 선고한 2012도10670 판결(이하 ‘2012도10670 판결’)입니다.

위 판결은 ‘지만원’이라는 한 극우 인사가 2008.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시스템클럽

(<http://systemclub.co.kr>)’ 게시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하 ‘2008년 게시물’이라 합니다)을 올려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필자는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고위 탈북자 감○○의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에서부터 수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유언비어는 북한 대남사업부 전문가들이 내려와 만들어 뿐인 것으로 추측된다. ‘경상도 군인들만 주력과 전라도 사람들 씨를 말리려 왔다’, ‘임산부의 배를 군화발로 짓이겨 태아가 빠져 나왔다’, ‘군인들이 대검으로 여대생의 유방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겼다’ 이런 자극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이라면 이런 기상천외한 유언비어를 만들지 못했다고 본다.”

- 이상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 1. 19. 선고 2010고합51 판결 참조

위 2012도10670 판결 사건의 제1심 법원은 위 2008년 게시물이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으며, 제1심 법원의 아래와 같은 판단은 이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인 피해자 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5·18민주유공자는 4,000명 이상이라는 것이고, 관련 단체가 파악하지 못한 5·18민주유공자, 나아가 5·18민주유공자에 우에관한 법률 등에 따른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5·18민주화운동에 참가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이 사건 게시물에 의한 비난이 5·18민주유공자들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나타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게시물은 피고인이 5·18민주화운동과 12·12사건 관련 자료들을 수집·정리·분석하여 그 결과물을 책자로 발간하기로 하면서 그 머리말의 일부로서 작성한 것이고(공소장에 기재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게시물의 다른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가 그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08. 10. 16.경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한 점, ② 4권으로 이루어진 위 책은 피고인이 관련 재판 및 수사기록, 북한에서 제작한 영화 및 기록물, 탈북 군인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기술한 것으로 그 목적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비난하는 데 있다기 보다는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피고인의 시각 내지 관점에서 다시 평가하는 데 있다고 보이는 점, ③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그 발생 배경과 경과, 계엄군과 광주시민 사이의 교전 사태의 발생원인,

경과, 그 밖에 인명피해의 발생원인, 5·18민주유공자들의 지위와 그에 대한 보상, 예우 등에 관하여 법적 및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이어서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하여 5·18민주유공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기준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이 5·18민주유공자 등의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 이상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 1. 19. 선고 2010고합51 판결 참조

2012도10670 판결 사건에서 지만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이유는 지만원의 위 2008년 게시물이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소위 ‘희석이론’이라 합니다).

당시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로, i) 채무자 지만원의 2008년 게시물은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평가에 불과한 것으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비난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으며, ii) 그 내용에 있어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난이 있다 하더라도 5·18 민주화운동 당사자가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5·18 민주화운동 당사자들 개개인에 대한 비난으로 볼 수 없다는 점, iii) 나아가 2008년 게시물을 통하여 5·18 민주화운동 당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바뀔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2012도10670 판결에서 법원이 채무자 지만원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5·18 민주화운동 당사자’라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의 일관된 태도에 따른 것일 뿐, 그의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주장들이 진실이라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만원을 비롯한 극우 인사들은 2012도10670 판결을 두고, 법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군에 의해 일어났다는 자신들의 생각을 지지한 것처럼 일반 대중들에게 알리며, 위 판결 이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왜곡 및 날조를 더욱 노골적으로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위 2012도10670 판결 선고 직후부터 ‘일간베스트 저장소’(www.ilbe.com, 이하 ‘일베’라고 합니다) 등의 보수적인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의 이용자들은 이 위 2012도10670판결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한 면죄부처럼 받아들이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모욕과 비난 행위뿐만 아니라, 광주·전라도 지역민들에 대한 비하 등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3. 1. 경 지만원은 ‘TV 조선’, ‘채널 A’ 등 일부 종합편성채널의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여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 주장을 하였으며, 이들 방송국은 이후 지만원과 ‘일베’ 이용자를 비롯한 극우 누리꾼들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중징계조치를 내리기까지 하였습니다.

다. 2015. 지만원과 <뉴스타운>의 ‘광수’ 시리즈 보도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의 경우,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은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법리, 소위 ‘희석이론’에 기대어 무죄 판결을 받은 지만원과 그를 추종하는 극우 누리꾼들은 ‘한번 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 없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흉어 택배” 등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한 경악할 만한 비하와 모욕 표현이 인터넷 상에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제(諸) 단체들은 이들에게 법적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수 차례 경고하였음에도, 이들은 오히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조롱과 사실 왜곡·날조 행위를 계속하였고, 급기야 지만원은 2015. 경 일베 사이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현장 사진 속의 한 인물을 특정하여 북한군 간부와 외모가 비슷하므로 북한군이라고 주장하는 게시물에 착안하여, 2015. 5. 5. “5·18 광주에 나타난 북한특수군 사진 특선”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시작으로 소위 ‘광수(“광주에 나타난 북한특수군”의 줄임말)’ 시리즈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극우 인터넷 언론사인 <뉴스타운>은 지만원의 위 게시물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였고, 이후 지만원과 <뉴스타운>은 위 ‘광수’ 시리즈를 다룬 기사만을 담은 ‘호외’를 두 차례에 걸쳐 제작하여, 광주시청과 전라남도청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각 10만부씩 무차별적으로 배포하였습니다.

결국,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제(諸) 단체들은 지만원이 ‘북한군’이라고 지칭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현장 사진 속 인물들과 그 유가족들을 찾아내어 그들과 함께 지만원과 <뉴스타운>이 제작·작성한 위 호외들과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발행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한편, 이들을 협의로 형사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라. 2017. 전두환 회고록 발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를 이끌었던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2017. 4. 경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들에 대한 학살을 정당화 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회고록을 발행하였습니다.

위 회고록 내용 중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것은 바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전두환은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군 개입에 의한 폭동’으로 정의내리며, 당시 다수의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확인되고 있는 계엄군의 광주시민들에 대한 ‘헬기사격’ 및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학살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나아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진상규명 과정에서 자신이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 되었다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1950년 북한의 남침 때 수백만 명의 인명피해를 무릅쓰며 싸웠던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었듯이 5·18사태 당시 정부와 계엄군이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던 무장 혁명 세력과 맞섰던 일도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정당하고도 불가피한 조치였음이 오래지 않아 명백히 밝혀질 거라 믿는다.

- 전두환, 『전두환 회고록 1. 혼돈의 시대』, 자작나무숲(2017), 535쪽

그러나 전두환은 회고록 발간 전인 2016. 4. 27. 월간 ‘신동아’와 가진 인터뷰에서 “5·18 당시의 북한군 개입설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라는 취지로 답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고록에서는 지만원을 비롯한 극우 네티즌들이 주장하는 ‘북한군 개입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당시 광주시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학살을 정당화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전두환은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한 사실을 진술한 故조비오 신부 등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허위事實을 펴뜨리고 있다고 맹비난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피터슨 목사와 조비오 신부의 헬기기총소사 목격 주장)은 헬리콥터의 기체 성능이나 특성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이거나 아니면 계엄군의 진압활동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려는 사람들의 악의적인 주장일 뿐이다.

- 전두환, 『전두환 회고록 1. 혼돈의 시대』, 자작나무숲(2017), 480쪽

이처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를 이끈 최고 책임자인 전두환이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법원의 판결문과 당시 수사기록을 일부를 발췌·편집하는 방식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북한군 개입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과거 지만원이나 일부 극우 정치인들, 누리꾼들이 했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전두환 회고록에는 위의 내용들을 비롯하여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다수의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있음에도, 발간 즉시 언론들의 대대적인 보도로 인하여 대형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 등에 전시되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38년 동안 ‘북한국 개입설’에 시달려 온 피해자와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들은 전두환의 회고록 발간에 거세게 반발하였으나, 전두환은 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며 적반하장(賊反荷杖)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제(諸) 단체들은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발행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한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 5·18 광주민주화운동 역사 왜곡에 대한 법적 대응

위 2012도10670 판결 이후 온·오프라인 상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수인한도를 넘어서게 되었고, 특히 2015. 지만원과 <뉴스타운>의 호외 제작 및 배포 사건과 2017. <전두환 회고록> 발간을 기하여, 광주 지역 법조에서는 광주지방변호사회와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를 중심으로 하여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일련의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하여 법적 대응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역사 왜곡에 대한 법적 대응은 민사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와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이루어졌던 바, 그 구체적인 과정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습니다.

가. 민사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1) 지만원과 <뉴스타운> 보도에 대한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①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외 5인이 2015. 9. 22. (주)뉴스타운과 지만원을 채무자로 정하여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광주지방법원 2015카합636호 사건)
→ 광주지방법원에서 2015. 9. 25. 가처분 인용 결정
- 채무자 측에서 2015. 11. 24. 위 인용 결정에 대하여 가처분 이의 신청(광주지방법원 2015카합749호 사건)
→ 광주지방법원에서 2016. 6. 2. 채무자들의 이의신청 기각
- 채무자 측에서 2016. 6. 21. 위 기각 결정에 대하여 항고(광주고등법원 2016라36호 사건)
→ 광주고등법원에서 2017. 9. 5. 채무자들의 항고 기각
- 채무자 측에서 2017. 9. 29. 위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하여 현재 대법원에 사건 계류 중(대법원 2017마1300호 사건)

② 손해배상청구

-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외 13인이 2016. 3. 15. (주)뉴스타운과 지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1950호 사건)
→ 광주지방법원에서 2017. 8. 11.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 선고
- 피고들 2017. 8. 22., 원고들 같은 달 25. 각 항소하여 현재 광주고등법원 민사 1부에서 소송 계속 중(광주고등법원 2017나13785호 사건)

2)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①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외 4인 2017. 6. 12. 전두환과 전재국을 채무자로 정하여 회고록 제1권의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광주지방법원 2017카합50236호 사건)
→ 광주지방법원에서 2017. 8. 4. 가처분 인용 결정
-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외 3인 2017. 12. 7. 회고록 제1권에 대한 추가 가처분 신청서 접수(광주지방법원 2017카합50489호 사건)
→ 2018. 1. 11, 같은 달 31. 각 심문기일 진행되고 심문종결.

② 손해배상청구

-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외 4인 2017. 6. 28. 전두환과 전재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하여 현재 광주지방법원 민사 14부에서 소송 계속 중(광주지방법원 2017가합 55560호 사건)

나. 형사 고소

1) 지만원에 대한 형사 고소

-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사제들이 2015. 8. 31. 지만원을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죄로 고소
-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사자 및 유가족들이 2015. 10. 경 지만원을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죄,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
-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사자 및 유가족들이 2016. 5. 12. 지만원을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죄,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
-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사자 및 유가족들이 2016. 12. 지만원을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
- 위 고소 사건 모두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095호 사건으로 병합되어 공판 진행 중.

2) 전두환에 대한 형사 고소

-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천주교 광주대교구 소속 사제인 故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2017. 4. 27. 회고록 내용 중 故조비오 신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 는 이유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위 고소 사건은 현재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진행 중.

4 | 結 語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국가의 외면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가족들, 그리고 광주시민들은 합심하여 38년 동안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기록과 진술들을 모으고, 전 세계에 우리 나라의 자랑스러운 민주화 운동의 역사로써 알렸음에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 행위가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확산 추세에 놓이게 된 것은 결국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운동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군의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 발포 경위 및 책임자 규명은 진상규명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이 과제라 할 것임에도 지금까지 지지부진해 왔었고, 결국 현재 진행 중인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개별적인 소송 절차 내에서 채무자와 피고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입증자료들을 당사자들과 대리인들이 직접 찾아내야만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북한군을 도와 내란 범죄를 저지르고도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존재로 규정되는 등 수인한도를 넘는 비방과 허위사실로 인하여 수십년 째 가늠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행히 현 정부 출범 이후, 2017. 9. 국방부에서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져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행적에 관하여 추가적인 중요 사실들이 밝혀졌고, 국회에서는 지난 2018. 2. 28.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 절차가 뒤늦게나마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앞으로 진행될 진상규명 과정에서, 국회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라는 오래된 법언(法諺)의 뜻을 무겁게 받아 들여, 더 이상 1988.의 5·18 국회광주특위의 과오를 반복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 발표문 2 •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미래적 가치

김세균 명예교수(서울대)

5월 광주민중항쟁의 역사적 의의와 미래적 가치

김세균 명예교수(서울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과 같이, 현대정치의 모든 문제는 최종적으로 민주주의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신민(臣民)에서 시민(市民)으로”가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이행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대 이전에 민¹⁾은, 민주정이 성립한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도시국가에서 민이 시민의 자격을 얻었던 것과는 달리, 어디서나 지배층에 예속된 ‘신민’의 처지를 벗어나지 못했다 - 노예는 민으로서의 자격조차 지니지 못한 ‘말하는 도구’에 불과했지만 -. 이와는 달리 근대로 들어오면서 민(民)은 통치에 복종해야 하는 신민에서 정치 참여의 권리를 지닌 시민의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런 변화는 오늘날 민주주의를 ‘보편적인’ 정치이념으로 만든 배경이 된다. 실제로 오늘날에는 어디에서나 많은 적든 민의 정치참여가 보장되고 있으며, 정치적 정통성 확보에 있어 민의 적극적이거나 수동적인 지지가 지닌 중요성 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치에서 민의 중요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민주주의의 문제 역시 더욱 중요한 정치적-사회적 문제가 되고, 또 이로 인해 제기되는 어떤 정치적 이슈도 민주주의의 문제를 비껴갈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우리는 오늘날에는 모든 제도개혁 등이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가운데에 이뤄지고, 나아가 그것이 민주주의의 축소나 후퇴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확대와 심화에 기여할 때만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축소·후퇴시키거나 민주주의의 확대·심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개혁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 시대의 정신에 역행하는 반(反)개혁적인 것이다. 현대세계에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민주주의의 확대·심화를 막는 체제는 장기적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

5월 광주민중항쟁은 기본적으로 민주항쟁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글에서 나는 광주민중항쟁이 민주주의에 대해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선상에서 광주민중항쟁의 역사적 의의와 미래적 가치를 고찰해 보려고 한다.

1) 민(民)은 원래는 지배층인 인(人)과 구분되는 일반 백성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민은 그리스어로는 demos, 영어로는 people에 해당되는 말이다. 그런데 ‘인민(人民)’은 원래는 인과 민을 모두 포괄하는 말로 사용되었지만, 오늘날에는 거의 민의 뜻을 지닌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이 경우 인민은 ‘일반 백성들의 무리’라는 뜻을 지닌 ‘민중’과 거의 같은 뜻을 지닌 용어가 된다.

1 | 민주주의 문제에 접근하는 기본관점

광주항쟁이 민주주의에 대한 관계를 논하기 전에 먼저 민주주의의 문제에 접근하는 기본관점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나의 생각을 개진해 보려고 한다.

(1) 민주주의 실현의 기반으로서의 저항권

민주주의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리를 사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원리로 삼는 정치·사회체제이자 그런 원리를 제1의 원리로 응호하는 이념이다.²⁾ 그런데 ‘민심이 천심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집기도 한다’(재주복주 載舟覆舟)라는 말들이 가리키다시피, 민은 지배층에 예속된 신민(臣民)의 처지에 놓여 있을 때에도 권력을 만들어 내거나 권력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궁극적인 원천이었다. 민이 지닌 이런 측면은 오늘날 입헌주의적 관점에서는 민이 지닌 ‘제헌적 권리’(constitutional power)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한다.³⁾

그런데 민이 지배층에 의해 통치대상으로만 간주되고, 이로 인해 민이 자신들의 요구와 염원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거나 민에 대한 폭력적 탄압이 자행될 때 민은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요구와 염원을 ‘민중봉기’나 ‘민중반란’ 또는 ‘항쟁’의 형태로 표출해 왔다. 이런 관계로 인해, 지배층이 주권재민의 원리를 정치·사회 구성과 운영의 기본원리로 수용하기 이전에는 민주주의는 우민정이나 폭민정을 응호하는 이념, 군중들의 폭동을 선동하는 역도들의 이념 등으로 매도당해야만 했다. 때문에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지배층이 어쩔 수 없더라도 주권재민의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들 정도로 민의 정치적 힘이 성장하는 것을 최소조건으로 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도입과 수호가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지배층의 권력 행사에 대한 민의 ‘저항’ 없이는 불가능함을 가리킨다. 저항권의 행사는 초법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저항권의 본질은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민 자신이 피를 흘려서라도 스스로 쟁취해 내야 할 민의 권리라는 데에 있고, 또 이를 통해 민이 자신을 주권적 존재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사정을 가리킨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민을 적대하는 지배층의 강압적인 권력행사나 폭정에 대한 민의 저항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수립과 유지를 가능케 하는 진정한 기반이라

2)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이라는 말은 국가 소속에 입각해 민을 규정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헌법 1조 2항은 보다 일반적이고 인류보편적인 수준에서는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로 대체되어야 한다. ‘국민주권’이라는 말도 일반적인 용어법으로는 ‘인민주권(people's sovereignty)’이라는 말로 대체해야 한다.

3) ‘제헌적 권리’이란 주어진 헌법을 개정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헌법적 질서 자체를 만들어내는 민의 초헌법적인 주권적 권리이라는 뜻을 가진다. 이와 관련, 우리는 근대주권론의 창시자로 불리는 장 보당(Jean Bodin)이 주권의 3대 요소로서 ① 지고의 권리, ② 위임 불가능성, ③ 분할 불가능성을 들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장 보당은 그러나 ‘인민주권론’이 아니라 ‘군주주권론’의 제창자였다.

고 말할 수 있다. 이 기반이 허물어지면 민주주의도 허물어진다. 저항권의 행사는 민이 권력을 만들어내고 권력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궁극적인 원천임을, 민이 제헌적 권리 행사의 주체임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민의 능동적인 정치적 실천이다.

(2) ‘민주주의의 이상’으로서의 민의 보편적 민중해방의 염원

민은 일반적으로 싫든 좋든 이미 성립된 정치질서 등에 ‘순응’하며 삶을 영위한다. 그러나 민은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힘을 합쳐 민중봉기나 민중반란을, 또는 항쟁을 조직해 불연 득 정치와 역사의 정면에 등장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나는 억압과 착취 등에 반대해 역사적으로 출현한 민중봉기나 민중반란 등에서 암묵적으로 표시되었던 민의 보편적 염원을 ‘이상(理想)으로서의 민주주의’ 내지 ‘민주주의의 이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출현한 민중봉기, 민중반란에서 표시된 민의 보편적 염원은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보편적 민중해방에 대한 염원’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염원은 억압과 착취, 일체의 차별과 배제 등이 사라진 상태에서 모두가 수평적 연대관계를 맺는 가운데 민 자신이 사회과정 전체를 관장하는 진정한 주인이 되는 사회, ‘인민주권(people's sovereignty)’이 온전한 형태로 실현되는 사회, 치자가 피치자가 되고 피치자가 치자가 됨으로써 치자와 피치자의 구분이 사라진 민의 전면적인 자기통치체제,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직접민주제가 사회 전 영역에서 온전하게 구현되는 사회적 상태‘에의 염원일 것이다.

(3) 결손을 지닌 미완성의 민주주의로서의 역사적 민주주의들

‘이상으로서의 민주주의’는 그러나 역사적 현실에서는 온전한 형태로 구현되기 어렵다. 때문에 역사적으로 출현하는 민주주의체제들, 즉 ‘역사적 민주주의’들은, 그것이 민주주의의 이상에 아무리 근접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것이든 그 자체로서 결손을 지닌 미완성의 민주주의일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역사적 민주주의는 어떤 것일지라도 절대적인 것으로 미화해서는 안 되며, 어떤 경우에도 결손을 지닌 미완성의 민주주의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후퇴와 왜곡을 막고, ‘더 많은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확대-심화’를 추구하는 것이 영구적인 정치적 과제임을 가리킨다.

이와 관련, 우리는 먼저 치자와 피치자의 구분이 존재하고, 간접민주주의 내지 위임민주주의의 성격을 지닌 대의제 민주주의 내지 대표 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란 민주주의의 이상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민주주의의 최소 수준에 가까운 민주주의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때문에 대의제 민주주의가 성립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직접민주주의 내지 참여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등을 신장시키고, 여기서 더 나아가 성립된 민주주의를 ‘직접민주주의’

우위의 민주주의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⁴⁾ 등은, 그리고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 산업 민주주의, 직장민주주의 등의 구현을 통해 사회 전 영역의 민주화를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는 것. 또 이를 통해 사회를, 사회구성원들이 민주적 덕성과 지성을 지닌 공민다운 공민이 되어 이들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사회과정 전체를 함께 통제하는 진정한 연대적 민주공동체로 전화시켜 나가는 것 등은 이른바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를 위한 영구적 과제로서 제출되어야 한다.⁵⁾

(4) 현실의 살아있는 절대적 운동으로서의 민주주의 운동

이상으로서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민의 운동이 추구해야 할 민주주의의 내용과, 민주화운동이 가야할 방향을 알려준다. 그런데 스피노자(Benedict de Spinoza)가 말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를 위한 민 자신의 운동은 현실의 살아 있는 절대적 운동으로서 역사적 현실 속에서 어떤 조건 하에서도 많은 적든 출현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그런 운동은 민의 민주적 역능이 증대하면 할수록 더 큰 위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운동은 현실의 성립된 민주주의체제와, 민주주의를 엘리트들 간의 자유경쟁을 허용하는 체제 정도로 제한하려는 엘리트민주주의의 한계를 돌파해 나가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그런 운동은 민을 정치과정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더 한층 끌어 올리고, 현실의 정치체제가 더 많이 민의 민주적 자치체에 가까운 것이 되도록 추동해 나간다.

2 | 광주민중항쟁과 민주주의

4) 일반적으로 많은 이들은 직접민주제가 소규모 단위의 도시국가에서는 수립 가능하지만 넓은 영토와 많은 주민을 지닌 영토국가가 성립되어 있는 현대적 조건 하에서는 간접민주제만이 실현 가능한 민주주의의 유일한 형태로 간주해 버린다. 이들과는 달리 근대 초기의 사상가였던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는 그의 주저인 『사회계약론』에서 영토국가가 성립한 현대적 조건에서도 직접민주제를 어떻게 가능케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은 정치이론가들은 직접민주주의 내지 참여 민주주의 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의 문제와 대결하고 있다. 이와 관련되는 현대의 주요한 논의로는 풀뿌리민주주의론, Pateman, Barber, Macpherson 등의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론, Laclau and Mouffe의 '급진민주주의론', Held, Keane 등의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사회적 접근', Habermas의 '토의민주주의론', Elster, Cohen and Sabel의 '죽의민주주의론', Benjamin R. Barber의 '약한 민주주의'와 '강한 민주주의'론 등이 있다.

5)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민주적 자치체로의 이동'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게오르그 쇠렌센의 논의가 중요성을 지닌다(『민주주의와 민주화』, 풀빛: 1994). 아래 도표 참조.

↑ 자유화 (형식적 자유에서 실질적 자유로)	(구체적 권리와 혜택)	복지 민주주의	민주적 자치체
	(형식적 자유와 권리)	정치적 민주주의	사회적 민주주의
		(공공제도 및 정부과정 참여)	(사회제도 및 경제과정)
→ 참여의 증대			

나는 위에서 민주주의 문제를 민주주의의 토대로서의 저항권, ‘민주주의의 이상’으로서의 민의 보편적 민중해방의 염원, 결손을 지닌 미완성의 민주주의로서의 역사적 민주주의들, 현실의 살아있는 절대적 운동으로서의 민주주의 운동이라는 네 가지 측면과 관련시켜 접근해 보았다. 광주민중항쟁은 이런 민주주의에 대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 ① 광주민중항쟁은 무엇보다도 ‘민주화의 봄’을 짓밟고 군부독재체제를 연장시키려 한 정치군부세력의 시도에 맞선 민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였다. 광주민중항쟁은 계엄군의 잔혹한 폭력적 진압과 학살에 굴복하지 않는 불굴의 용기를 보인 항쟁이었다는 점에서, 광주시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엄호 속에 이뤄진 전면적인 항쟁이었다는 점에서, 총칼로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에 대한 대항폭력의 조직화와 무장투쟁의 전개가 민의 저항권 행사의 최고의 형태임을 입증한 투쟁이라는 점에서, 스스로의 무장을 통해 계엄군을 광주시내에서 몰아내고 짧은 기간이나마 광주를 광주시민들의 진정한 해방공간으로 만든 항쟁이었다는 점에서 그 전례를 찾기 어려운 참으로 빛나는 투쟁이었다.

그러나 저항권 행사로서의 광주민중항쟁의 의의는 그 투쟁이 지닌 이런 빛나는 측면들과 더불어 그 투쟁의 비극적 종말이 오히려 이후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끓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투쟁에 나서는 용기를 북돋아 주고,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을 한국 민주화운동의 가장 고결한 정신으로 비약시키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데에도 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도청을 사수한 시민군이 진압당하기 전날 ‘보고 싶은 얼굴’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당장이라도 달려가 만나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고하고 다음날 자신들의 피를 민주주의의 제단에 뿌리는 순교자의 길을 택했는데, 그런 길을 택했기 때문에 광주항쟁의 정신은 무덤에서 부활해 이후 모든 민주화운동의 살아있는 가장 순결하고 숭고한 정신으로 승화할 수 있었다. 이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길을 택한 예수가 그런 죽임을 택함으로써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었던 것 같은 것이었다.

- ② 앞에서 나는 광주민중항쟁이 스스로의 무장을 통해 계엄군을 광주시내에서 몰아내고 짧은 기간이나마 광주를 광주시민들의 진정한 해방공간으로 만들었음을 지적했다. 그런데 이 공간은 항쟁 속에서 ‘민주주의의 이상’에 가장 가까운 시민 모두의 참으로 민주적인 연대적 공동체가 출현하는 공간이 되었다. 이 공간에서 시민들은 자신들 내부의 직업, 성별, 소득 등의 차이들을 넘어 폭력적 탄압에 대한 분노와 민주주의에의 열망을 공유하면서 항쟁을 위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자신들의 진정한 민주적 자치공동체를 형성시

쳤다. 물론 이 공동체는 성립된 국가적 공동체를 대체하기 위한 민의 새로운 정치적 공동체가 아니라, 항쟁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고, 항쟁이 종결되면 기존의 국가 공동체 속으로 해체될 수밖에 없는 민의 일시적인 한시적 공동체라는 한계를 지닌 것이었다. 이런 점은 광주의 항쟁공동체를, 자신들이 조직한 새로운 공동체로써 기존의 국가체제를 대체하려 한 1871년 파리코뮌과 결정적으로 구분시키는 가장 중요한 측면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쟁에 참여한 광주시민들은 그 기간 중 참으로 민주적인 연대적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돋고 함께 싸움으로써 민주주의의 이상인 민주적 관계의 진실을 체험하는 참으로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비록 그와 같은 진실의 순간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지만, 그런 순간의 체험은 민주주의의 이상이 단순한 유토피아가 아니라, 특정의 조건이 종족 되면 현실화될 수 있는 현실적 유토피아임을 입증해 주는 것이기도 했다. 나아가 그런 경험은 민주주의의 이상이 민주화운동이 앞으로 채워나가야 할 내용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일깨우는 미래적 가치임을 일깨워 주며, 민주화운동을 최소수준의 민주주의가 생취될지라도 거기서 멈출지 않고 더 나아가 성립된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 나아가게 만드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만든다.

광주민중항쟁은 그 자체로서는 민의 장렬한 저항권의 행사이자 최소수준의 민주주의를 생취하기 위한 반독재민주화운동이었다. 그러나 그 항쟁은 이미 그 내부에 민주화운동이 현실의 역사적 민주주의들이 지닌 한계들 넘어서는 절대적 운동을 발전하고, 또 그럼으로써 민주화운동을 보다 풍부하고, 보다 급진적인 민주변혁운동으로 발전시키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최초의 대대적인 민주항쟁이기도 했다. 광주민중항쟁은 그 이전 시기의 모든 민주화운동의 총결산이자 민주화운동의 미래적 가치를 선취한 한국 민주화운동의 진정한 정점이었다.

- ③ 한국현대사는 크게 보아 1987년 6월 민주화를 위한 범국민적 투쟁 이전과 그 이후로 구 분된다. 이때 87년 6월 투쟁 이전의 시기는 이승만체제로 대표되는, 민주주의의 외피를 쓴 실질적인 권위주의적 경찰국가체제의 시기이자, 그 한국적 완성태가 유신체제인 권위주의적인 군부파시즘체제의 시기였다. 이와는 달리, 그 이후의 시기는 크게 봄 민주화 과정이 도입되고 민주주의가 일정하게 공고화됨으로써 민주주의의 후퇴가 이뤄질 때에도 그 후퇴가 더 이상 87년 6월 이전으로까지는 되돌아갈 수 없는 비가역적인 변화가

이뤄진 시기로 규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근혜정권의 시기에는 민주주의의 전방위적인 후퇴가 이루어졌고 권력의 사유화 등이 폭넓게 진척됨으로써 한국의 민주주의가 고사 직전으로까지 내몰리기도 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란 최소수준의 정치적 민주주의라는 점 - 최소수준의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볼지라도 많은 한계를 지녔지만 -, 지배세력이었던 군부세력(과 이들과 연합한 극우 민간세력)과의 타협을 통한 민주화라는 이른바 '타협적 민주화'를 통해 민주화과정이 도입됨으로 말미암아 민주화과정이 크게 지체되고 왜곡되었다는 점, 여기서 더 나아가 1997년 한국이 IMF 외환금융위기에 빠진 이후 위기극복책으로 시장 만능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이 본격화됨으로 말미암아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가 진척될 때에도 실질적-내용적 민주주의는 심대한 후퇴를 거듭해 왔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박정희체제가 전두환체제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발생한 광주민중항쟁은 비록 실패하고, 지역적으로 고립된 항쟁이긴 했지만 항쟁으로서의 최고형태를 구현하고, 짧은 기간이나마 광주에서 민주주의의 이상에 가까운 민주적인 연대적 공동체를 출현시켰고,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이 민주주의가 지닌 승고한 정신을 온전하게 대변하는 점에서 심대한 역사적 의의와 세계사적인 보편적 의의를 획득했다. 나아가 광주민중항쟁이 이후의 민주화운동과 한국현대사의 전개과정에 키친 영향은 다른 어떤 민주화운동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지속적인 것이었다.

광주민중항쟁은 1980년대를 이른바 '위대한 각성'의 시기로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고, 이후 한국사회 전반의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정치적·사회적 주체들의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이 새로운 주체들은 노동자-농민 등 기층민중과 함께 투쟁하면서 노동 운동과 기층민중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이 운동이 우리사회의 발본적인 민주변혁운동으로 성장시키는 데에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 한국사회에서도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넘어서는 민주변혁운동이 본격적으로 대두하기 시작했다,

광주민중항쟁은 군부독재체제의 반민중성과 반민주성, 반인륜성 등을 백일하에 폭로함으로써 군부독재체제의 정통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고, 이로 인해 군부세력이 이후 폭력을 동원해 사회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스스로 자제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으며, 전두환체제를 일종의 '이완된 파시즘' 체제로 전환시키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유혈적인 광주민중항쟁이 없었다면, 경찰과 시위대들 간에 치열한 폭력적인 충돌은 있었지만 총기

사용과 군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어 87년 6월 항쟁은 광주민중항쟁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화적인 투쟁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 광주민중항쟁은 군부독재체제의 퇴장의 임박성을 만천하에 알렸고, 6월 항쟁은 민주화과정을 도입시켜 민주정부가 수립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었다. 그런데 이 투쟁의 이름 없는 주역들은 무엇보다 광주민중항쟁의 진실을 접하면서 정치적으로 각성한 이 땅의 청춘남녀들이었다.

4 | 결론

2016년 촛불혁명은 ‘주권재민’의 이념이 살아있는 이념임을 입증하는 기념비적 사건이다. 광화문과 전국 각지의 광장을 가득 메운 민의 거대한 함성은 보수세력의 아성인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이 통과되도록 했으며, 이후 정권교체를, 정권교체 이후에는 적폐 청산과 극우보수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의 상실과 방향상실을, 남한의 대북정책의 변화 등을 추동시켜 나가고 있다. 그런데 이 혁명이 평화시민혁명의 형태로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은 87년 민주항쟁을 통해 민주화과정이 도입되고, 민주주의가 일정하게나마 공고화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이 혁명이 과연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의 극복과 날로 심각해지는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재벌체제의 개혁과 독점재벌기업에 대한 사회적-민주적 규제의 강화와 같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혁명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는 아직은 미지수이다. 확실한 것은 이 혁명이 그 수준으로까지 발전할 때에만 촛불혁명의 성공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결국 ‘이완의 혁명’으로 끝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 광주민중항쟁은 이후 우리 사회가 지닌 근본적인 구조적 모순이 무엇이며, 그러한 구조적 모순들을 해결하려면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와 같은 한국사회의 현실에 대한 성찰을 촉발시키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이와 관련, 우리는 촛불혁명이 미완의 혁명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광주민중항쟁이 촉발시킨 이런 성찰을 통해 발견된 한국사회의 제반 주요 문제들에 대한 발본적인 해결책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 과제는 그런 모든 과제들 중에서도 그 중요성이 지대하다.

총괄해 보면, 광주민중항쟁은 항쟁 자체가 지닌 완전성과 치열함, 충고성 등등에서 한국 민주화 운동의 금자탑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었다. 광주민중항쟁은 이후의 한국 민주화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 광주민중항쟁은 항로를 가리키는 북극성처럼 한국 민주화운동을 이끄는 별이 되어 지금도 우리 위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한국민주화운동의 항도성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을 따르는 한 어떤 난관도 돌파해

나가는 불패의 운동으로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이 우리에게 살아 있는 한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밝다.

〈부언〉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은 민주공화국 헌법인 대한민국의 헌법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민주주의 정신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 점에서, 나는 광주민중항쟁의 계승-발전은 헌법 전문에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는 점을 새삼 강조하고 싶다.

• 토론문 4 •

이승우 교수

가천대 법과대학

토론문 4

이승우 교수(가천대 법과대학)

I | 서언

5.18민주화운동에 대하여 나름의 연구를 해야 한다는 마음에 응어리진 빚이 있었는데, 2018년 개헌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하여 발표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너무나 기쁘고 기회를 주신 주최측에 감사드린다.

II | 김세균교수의 “5월 광주민중항쟁의 역사적 의의와 미래적 가치”에 대한 토론

1. 발표문의 요약

(1) 서론

현대정치의 모든 문제가 최종적으로 민주주의의 문제이고, 정치에서의 민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민주주의의 문제가 중요해지며, 민주주의의 확대·심화에 기여하는 경우에만 개혁적이다.

(2) 민주주의 문제에 접근하는 기본관점

- 1) 민주주의 실현의 기반으로서의 저항권 : 민주주의는 주권재민의 원리이고, 민이 제헌적 권력임을 의미한다. 민주주의는 지배층이 어쩔 수 없이 주권재민의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는 최소조건이다. 저항권은 민이 권력을 만들어내고 권력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궁극적 원천임을, 민이 제헌적 권리의 주체임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민의 능동적인 정치적 실천이다.
- 2) 민주주의의 이상으로서의 민의 보편적 민중해방의 염원 : 민의 보편적 염원을 ‘이상으로서의 민주주의’ 내지 ‘민주주의의 이상’이라고 부를 때, ‘인민의 자기지배’를 의미하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직접민주제가 사회 전 영역에서 온전하게 구현되는 사회적 상태.

3) 결손을 지닌 미완성의 민주주의로서의 역사적 민주주의 : 역사적 민주주의는 어떤 경우에도 미완성의 민주주의이고, 대의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최소 수준에 해당한다. 따라서 직접민주주의 우위의 민주주의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정치영역은 물론이고 사회·경제·산업·직장 등 사회 전영역에서의 민주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3) 광주민중항쟁과 민주주의

- 1) 광주민중항쟁은 무엇보다도 ‘민주화의 봄’을 짓밟고 군부독재체제를 연장시키려한 정치군부세력의 시도에 맞선 민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였다. 그 투쟁의 비극적 종말이 오히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투쟁에 나서는 용기를 북돋우어 한국 민주화운동의 가장 고결한 정신으로 비약케 했다. 민주주의의 제단에 뿌리는 순교자의 길은 무덤에서 부활한 민주화운동의 살아있는 가장 고결하고 숭고한 정신으로 승화했다.
- 2) 광주민중항쟁은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한 진정한 민주적 자치공동체를 한시적으로 형성함으로써 민주화운동으로 채워나가야 할 내용과 방향을 제시한 미래적 가치였다. 즉 광주민중항쟁은 이전의 모든 민주화운동의 총결산이자 민주화운동의 미래적 가치를 선취한 한국 민주화운동의 진정한 정점이다.
- 3) 한국현대사의 구분 : 1987년 6월 범국민적 민주화 투쟁 이전은 이승만의 권위주의적 경찰국가체제, 박정희유신체제인 군부파시즘체제, 전두환의 이완된 군부파시즘체제였고, 이후는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고 민주주의의 후퇴가 용납되지 않게 되었다. 다만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후퇴가 이루어졌다.

여기서 광주민중항쟁은 1980년대를 ‘위대한 각성’의 시기로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 노동운동과 기층민중운동을 활성화시키고 반독재민주화운동을 넘어서 민주변혁운동으로 나아가게 했다. 또한 광주민중항쟁은 군부독재체제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치명적 타격을 가하고, 군부세력이 폭력을 동원해 사회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게 하며, 군부독재체제 퇴장의 임박성을 알렸다.

(4) 결론

광주민중항쟁은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구조적 모순이 무엇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광주민중항쟁은 항쟁 자체가 지닌 완전성과 치열함, 숭고성 등에서 한국 민주화운동의 금자탑이며, 한국 민주화운동의 항도성이다.

2. 토론

- ① 무엇보다도 헌법학을 전공한 본인에게도 읽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는 점에서 김세균 교수님의 필력에 대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상당한 정치학 관련 토론자료를 접해보았지만 이런 글은 처음이었다.
- ② 내용에 있어서도 ‘이상으로서의 민주주의’라는 내용을 가지고 광주민중항쟁을 대비시켜 설명한 점은 본인의 시각에서 상상해보지 못한 것이었다.
- ③ 본인도 최근 우리 국민들이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는데, 그것이 ‘민주주의의 이상’이었다는 점을 새로이 배웠다.
- ④ 주장하신 내용, 즉 광주민중항쟁의 저항권성, 한국 민주화운동의 정점이라는 지적, 위대한 각성의 시대를 가지게 하며 우리 헌정사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는 점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한다.
- ⑤ 다만 토론문을 기다리며 본인이 가지고 있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나름의 평가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기 때문에 첨부하는 것으로 하였고, 헌법학적 시각에서 약간의 보완이 되었으면 한다.

III | 주제와 관련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토론자의 입장

1. 저항권의 시각에서의 5·18민주화운동

(1) 5·18민주화운동은 ‘전형적 저항권’의 행사였다.

- ① 전형적 저항권이란, 저항행위가 대부분 헌법침해의 주체인 집권자에 대한 항거이기 때문에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고 박해를 받지만, 저항행위가 사후에 역사적으로 정당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재심을 통해 사면 또는 복권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②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운동은 ‘3·1독립운동’이다. 이 3·1독립운동에서 시작된 국민운동은 독립 이후 헌정이 시작된 이후로는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이 저항운동의 시초는 ‘4·19의거’이며, 이것이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으로 이어졌다.¹⁾ 그러나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 다행인지 불행

인지 다른 저항권의 행사가 모두 성공한 저항권으로 평가됨에 비하여, 유독 5·18민주화운동만이 당시로서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어 명백하게 전형적 저항권에 해당한다. 결국 5·18민주화운동의 경우만이 저항권의 본질과 관련하여 “저항권은 실정법화가 되더라도 저항활동을 변호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실감나게 한다.²⁾

③ 따라서 5·18민주화운동은 4·19의거나 6·10항쟁의 경우와 같이 곧바로 성공한 저항권과는 차원이 다르다. 즉 4·19의거는 이승만정권의 퇴진과 함께 헌법개정이 이루어지고, 부마항쟁은 바로 10·26사건으로 이어져 박정희정권이 무너지며, 6·10항쟁은 곧바로 6·29선언을 얻어내며 현행헌법의 개정으로 이어져 성공한 저항권이 된다. 그리고 4·19의거는 저항권의 역사에 있어서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성공한 저항권이 되었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은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의 정권장악을 막지 못한 결과 무자비한 처벌을 받음은 물론이고 끊임없는 박해를 받아왔고, 전두환정권의 출범 이후에는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였음을 주장하고 변호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을 이끌었으며, 그 결과가 6월항쟁으로 이어지고 6·29선언을 얻어내며 1987년의 헌법개정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5·18민주화운동은 문민정부에 들어서 5·18청문회 등을 거쳐 1996년 성공한 저항권으로 법제화되는 전형적 저항권으로 자리매김한다.

(2) 5·18민주화운동은 ‘전두환 신군부세력의 헌법침해’에 항거한 저항권이었다.

① 5·18민주화운동은, 헌법침해를 전제로 하는 저항권의 성립여부에 있어서, 당시의 집권자인 최규하 대통령의 헌법침해가 아니라, 군부장악을 위한 12·12쿠데타(군사반란죄 등으로 처벌됨)에 이어 단계적 쿠데타의 일환으로 5·17비상계엄확대를 통한 정권찬탈을 기도한 전두환 신군부세력의 헌법침해(정확한 법적인 용어는 내란죄 및 내란목적 살인죄)의 불법성을 막기 위한 저항이었다.

② 5·18민주화운동은 4·19의거나 6·10항쟁에 있어서와 같이 집권자의 헌법침해에 대한 항거가 아닌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저항권의 통설적 정의에 비추어 “위헌적인 권력행사를 통한 헌법적 가치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예비적이고 최후적인 헌법보호수단”이라는 의미에 합치되지만,³⁾ 합헌적 집권자에 의한 헌법침해가 아니라 불법하게 군조직을 동원한 쿠데타세력의 정권탈취라는 헌법침해에 항거한 것이라는 점에서, 5·18민주화운동은 더욱 값진 것이다. 즉 체계적으로 조직되고 물리력을 갖춘

1) 다음에 각각에 대한 성격규명을 하겠지만, 우선은 지금까지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2) Josef Isensee, Das legalisierte Widerstandsrecht, Verlag Gehlen, 1969, S.96ff; 이승우, 헌법학, 도서출판 두남, 2013, 148면.

3)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3, 86면; 이승우, 상계서, 145면.

군조직을 장악하여 시위현장에 투입하고, 군통수권자의 지휘도 없이 불법적으로, 단순한 시위진압이 아닌 무자비한 살육작전을 전개한 신군부의 헌법침해행위에 항거하는 저항권의 행사였다.

③ 따라서 5·18민주화운동은 옆으로부터의 헌법침해라고 하는 쿠데타를 막기 위한 저항권인 점에서 더욱 가치를 가진다. 합법적 국가권력(정권)에 의한 헌법침해도 문제이지만, 불법한 쿠데타세력에 의한 헌법침해는 더욱 불법성이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불법하게 동원된 군조직의 무자비한 자국민에 대한 살상은 그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헌법침해라는 점에서 정당한 저항권이었다. 5·18민주화운동이 세계문화유산이라는 무형의 문화재로 등재된 것은 국가론의 시각에서 “모든 국가권력(정권)은 자국민의 생명보호가 최고의 목적이고 과제이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기도 하다.

(3) 5·18민주화운동은 저항운동에 그치지 않고 ‘민주화운동’으로 발전한 경우이다.

① 저항권발동의 전제가 되는 헌법침해가 계속되는 한 저항운동은 계속된다. 그러나 헌법침해행위가 타도되거나 헌법침해가 단념되는 경우 저항권발동의 대상인 헌법침해가 사라지게 된다. 즉 헌법질서를 침해한 헌법의 적이 성공에 이르러 기존의 헌법을 무효화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관철시키거나(혁명이 성공한 경우) 쿠데타가 성공하여 정권찬탈을 합법화하기에 이르면 저항권발동의 대상인 헌법침해라는 전제가 사라진다.⁴⁾ 이러한 경우에는 투쟁의 목적이 전자는 저항이 아니라 헌법폐지를 위한 혁명으로 발전하게 되고, 후자는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정통성시비와 관련하여 민주화운동으로 발전한다.⁵⁾

② 따라서 5·18민주화운동은 저항권으로서의 성격으로 시작하여 민주화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는 ‘전형적 저항권’임을 알 수 있다. 비록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의 정권장악을 막지 못했지만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권이라는 것, 이후 제5공화국헌법을 제정하여 정당화를 추진했지만 유신헌법과 마찬가지로 타도되어야 할 헌법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심어줌으로써, 5·18민주화운동은 혁명적 민주화운동으로 발전하는 기틀이 되었다. 특히 1980년 5월 ‘서울의 봄’을 통하여 분출된 국민주권이념의 확립, 즉 유신헌법에 의하여 빼앗겼던 대통령직선제를 비롯하여 국민주권의 이념을 망각한 각종 제도(대표적으로

4) Josef Isensee, Das legalisierte Widerstandsrecht, Verlag Gehlen, 1969, S.25f.

5) 5·18민주화운동이란 명칭은 ‘광주소요사태’, ‘광주사태’라는 초기 신군부의 명명에 이어, 광주시민들의 주장을 대변하는 ‘5·18광주민중항쟁’ 등으로 불리다가 최종적으로 ‘5·18민주화운동’으로 정착되고 있다. 이것은 앞서 독일이 저항권을 실정권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한 평가로 내놓은 Josef Isensee 교수의 입장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개념이요 명칭이다.

선거제도)의 확보를 위해 끊임없는 투쟁의장을 열어주었다. 이러한 운동의 결과가 제5공화국말기의 6.10항쟁으로 귀결되었음을 말할 필요도 없다.

(4) 5.18민주화운동은 1996년 국가기념 민주화운동으로 되며 ‘성공한 저항권’이 되었다.

- ① 전형적 저항권의 경우 저항행위가 시작되고 실패로 인하여 반국가사범으로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또 다른 차원의 민주화운동으로 발전하며 성공한 저항권으로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 결과 5.18민주화운동은 진상규명과 전두환 정권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민주화운동으로 발전하여 6.10항쟁으로 이어지고, 국민주권이념에 부합하지 못하는 제5공화국헌법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한 혁명성을 바탕으로 1987년 현행헌법의 개정합의에 연계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문민정부의 출범에 따라 성공한 저항권으로 복권된다.
- ② 따라서 5.18민주화운동이 성공한 저항권으로 인정된다면, 그것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의 운동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1980년 5월 18일에 시작되어 적어도 1996년 성공한 저항권으로 복권되기까지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고, 사실상 별개의 사건으로 주장되는 6.10항쟁도 그 시간적 범위에 포함된다. 오히려 6.10항쟁이 5.18민주화운동의 기나긴 저항운동에 포괄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국가론의 시각에서의 5.18민주화운동

(1) 국가론의 시각에서 국가권력의 목적과 과제

- ① 국민주권이념을 국가의 근본이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현대국가에 있어서, 국가권력은 자기목적적인 존재가 아니라 일정한 목적과 과제를 가진 수단적·기능적 존재이다.⁶⁾ 그리고 국가권력이 추구해야 할 정신적이고 이념적인 목적과 과제는 입헌국가의 경우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권력이 자신의 목적과 과제를 망각하거나 일탈하여 헌법적 가치질서를 침해하는 경우 주권자인 국민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국가권력은 다양한 형태의 정당성원천에 근거해서 피치자인 국민의 자발적 복종을 얻어내지 못하면 정당성의 위기를 맞으며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국가권력이 위헌적인 권력행사를 빈번하게 하면 정당성의 기반이 약해지고 국민의 저항의지가 점증함에 비하여, 국가권력이 합헌적 권력행사를 하여 정당성을 확보하면 할수록 국민의 저항의지는 사라지는 관계에 있다. 이것은 저항권과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관계가 불가분의 역비례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⁷⁾

6) 이승우, *국가론*, 도서출판 두남, 2010, 123면 이하.

7) 이승우, “현대입헌민주국가에서의 저항권에 관한 연구”, 연세법학연구(1989. 8), 14면.

② 현대국가는 기능적 관점에서 3가지 국가의 목적과 과제를 가진다. 국민주권이념을 받아 들인 근대국가의 초기에는 주로 민주국가적 관점이 강조되는 목적과 과제로 출발했다. 즉 형식적 민주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를 지향한 결과 국가의 목적과 과제를 대체로 국방과 치안유지에 두었으며, 이것은 오늘날에도 ‘질서와 평화의 보장’이라는 국가의 제1차적 목적과 과제로 정착했다. 그런데 19세기말부터 20세기 들어 형식적 민주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실질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정치적 내지 법적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는 국가의 목적과 과제가 강조된다. 그리고 20세기 중엽부터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실질적 자유와 평등’이 실현될 수 있는 사회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국가는 첫째로, 질서와 평화의 보장은 물론이고, 둘째로, 정치적 내지 법적 자유와 평등의 보장, 그리고 셋째로, 실질적 측면에서의 자유와 평등의 보장을 실현해줄 수 있어야 국가권력의 목적과 과제를 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3가지의 목적과 과제 가운데 어느 것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양한 국가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것이 국가권력의 과제가 되고 있는데,⁸⁾ 여기서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되는 경우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상실되며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⁹⁾

③ 5·18민주화운동은, 직접적 원인은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의 정권찬탈을 막기 위한 항거에서 시작된 저항운동이었고, 국가권력의 목적과 과제를 져버린 무자비한 자국민의 생명 살상에 대한 항거이었다. 정당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기본권행사를 오로지 정권찬탈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만행을 저지른 것에 대한 저항이었다. 그리고 5·18민주화운동은 그러한 만행에 대한 저항운동에 그치지 않고 민주화운동으로 발전한 것을 역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미 유신헌법의 문제점과 박정희독재정권에 대한 반성을 1980년 5월의 ‘서울의 봄’에서 모든 국민들이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신군부가 정권장악 이후 추진한 제5공화국헌법제정에서도 유신시대의 청산이 아니라 군사독재의 연장이라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주권이념을 망각한 대통령간접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배분, 또 앞에서 지적한 국가의 목적과 과제의 측면에서의 국가안보를 핑계삼아 국민의 정치적 내지 법적 자유를 탄압하는 것, 지나치게 자본의 논리를 지지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 등 국가의 목적과 과제의 관점에서 유신시대와 비교하여 변한 것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국가론의 시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은 전두환정권의 출범을 막기 위한 투쟁에 그치지 않고, 1980년 5월 ‘서울의 봄’에서 확인된 국민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임을 인식하고 실천에 옮기기 시작한 것이며, 이것이 단순한 저항운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발전한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8) 이승우, 국가론, 123-130면.

9) 국가안보를 우선하며 국민을 억압했던 과거의 이승만정권 이후 군사독재시절이 이에 해당한다.

5·18민주화운동은 끊임없는 개헌주장에도 불구하고 4·13호헌조치로 맞선 전두환정권에 대한 투쟁으로 이어지며 6·10항쟁을 거치며 혁명성을 띠게 된다. 6·10항쟁의 불씨는 결국 5·18민주화운동인 것이다.

(2) 국가론의 시각에서의 혁명과 저항권 등

- ① 국가론의 시각에서 혁명과 저항권은 기능과 행사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혁명은 행사목적과 관련하여 현존하는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헌법질서를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파괴적이며 법창조적인 행위인데 반하여, 저항권은 현존하는 헌법질서를 방어하고 보호하는 헌법보호수단이라는 점에서 기능상 차이가 있다. 또한 현대적인 시각에서의 행사방법과 관련하여 혁명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으로서 단한번의 행사로 끝남에 비하여, 저항권은 계속적이고 수시적인 현상으로서 부패한 권력 내지 헌법침해세력이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요구되는 움직이는 힘이다.¹⁰⁾
- ② 따라서 5·18민주화운동은 혁명의 시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저항권의 시각에서 시작된 운동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전형적 저항권의 모습에서 지적했듯이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세력에 대한 끊임없는 불신임과 퇴진운동을 통하여, 그리고 제5공화국헌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6·10항쟁이라는 혁명의 불씨가 되었다.

(3) 혁명, 저항권, 항쟁, 민주화운동 등의 용어사용

- ① 국가론과 헌법학의 시각에서, 혁명과 저항권의 의미가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음에 비하여, 항쟁·민주화운동 등의 용어는 학문적으로는 확립되지 못하고 실무적 차원에서 사용되고 있다.
- ② 혁명이란 용어는 프랑스대혁명 등과 같이 구체제를 타파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경우를 지적하는 용어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칼 슈미트의 경우 헌법제정권력이 군주주권에서 국민주권으로 바뀌는 것과 같이 헌법제정권력의 주체가 변한 경우를 혁명이라 지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민주권이 이미 확립된 오늘날 주권이 바뀌는 것과 같은 급격한 변화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지만, 혁명이란 용어는 자주 사용된다. 칼 슈미트의 지적과 달리 급격한 헌정체제변화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한다. 따라서 오늘날은 혁명이란 용어를 ‘급격하고 포괄적인 헌정체제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혁명의 정의에 매달리기보다는 ‘혁명적’이라고 하는 형용사적 사용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이승우, 헌법학, 147면.

그런데 혁명을 위와 같이 이해하는 경우 4.19의거가 혁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로 된다. 4.19의거는 체제변화를 요구하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주로 이승만정부의 부패와 부정 선거 등을 문제삼아 퇴진을 요구하며 헌법규범질서의 회복을 주장하는 저항운동이었다. 너무나 뜻밖에 이승만정권이 스스로 물러나고 저항권이 성공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당시의 국회가 개헌으로 발전시켰을 뿐 4.19의거 자체가 혁명성을 갖지 못했다. 이에 반하여 6.10항쟁은 처음부터 전두환정권의 4.13호헌선언에 대한 항거와 개헌(체제변화)을 담보 받아내는 6.29선언을 이끌어 내고 실천에 옮기게 한 점에서 혁명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살펴본 기준에 따르면 우리 헌정사에서 유일한 혁명이라 부를 수 있다. 또한 성격규명에 있어서 아직 이른 감이 있으나, 2016년 말에 시작된 촛불시위도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이 표면적 원인이었지만, 헌법학자인 본인의 시각에서 보면, 근본적 원인은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사태가 정권마다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의 방법이 탄핵제도 이외에 없다는 현행제도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촛불시위의 근본취지는 대통령제의 근본적 문제점인 책임추궁의 방법으로서의 불신임제도(국민에 의한 직접적 심판)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개헌을 통한 체제변화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재인대통령이 그 촛불시위의 근본취지를 살려 개헌에 성공한다면 혁명으로 부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③ 저항권이란 용어는 이미 실정헌법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학에서 가장 잘 정리가 되고 있다. 다만 헌법개정을 논의하며 저항권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주장이 있는 시점에서 주목할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다. 저항권을 명문화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의 관념에 따라 대의민주주의 헌법에 기초하면서도 직접민주주의적 권력행사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¹¹⁾ 따라서 직접민주주의제도의 도입에 따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저항권은 모든 저항활동이 합법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성공하지 못한 저항권의 행사는 저항권이 아니고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고, 저항권을 명문화하는 경우에도 모든 저항활동이 합법화되는 것이 아니라 저항활동을 변호하는 것이 합법화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¹²⁾

그런데 우리 헌정사에서 6.10항쟁이 혁명성을 명확히 갖추고 있지만, 4.19의거를 비롯한 나머지 대부분의 큰 사건들은 사실상 저항권의 범주에 포함된다. 다만 4.19의거의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자 하는 학자들의 경우 헌법개정에 이르게 한 과정까지를 고려하여 혁명으로 부르고 있고, 상당히 많은 정치학자들은 물론이고 헌법학자들도 동조하고 있다.

11) 이승우, “현대입헌민주국가에서의 저항권에 관한 연구”, 26면.

12) Hans Schneider, Widerstand im Rechtsstaat, in: 아더 카우프만 편집, Widerstandsrecht, S.XI.

④ ‘항쟁’이란 용어는 물론이고 ‘민주화운동’이란 용어는 학문적으로 정리된 것이 없다. 문제는 각종 기념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제정과정에서 추진주체들의 주장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조만간 용어들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되, 그 성격에 있어서는 앞에서 살펴본 저항권과 다르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그 저항권의 행사가 일시적으로 그쳤느냐 아니면 지속적 민주화운동으로 귀결되고 있느냐에 따라 전자의 경우가 항쟁으로 후자의 경우가 민주화운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마항쟁과 6.10항쟁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저항권의 행사가 바로 성공함으로써 목적이 달성되고, 그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행해진 저항권이란 의미에서 적합한 명칭이 된다. 그에 반하여 5.18민주화운동은 초기에 ‘5.18광주사태’라는 용어에 이어 ‘5.18민주항쟁’ 또는 ‘5.18민중항쟁’ 등으로 부르다가 또 다른 저항권행사의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간 결과 ‘5.18민주화운동’으로 발전한 것이고, 그 운동이 1996년 법률로 제정되면서 명실상부한 전형적 저항권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런데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 혁명과 항쟁의 구분 기준으로 국민의 투쟁에 의해 대통령이 임기 중간에 하야 또는 탄핵 등에 의해 퇴진하는 경우에는 혁명,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항쟁으로 정의한 것으로 보인다.¹³⁾ 그러나 대통령의 하야나 퇴진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학문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구분기준으로 보이고, 만약 6.10항쟁을 그런 취지에서 붙인 명칭이라면 전두환정권이 임기를 마쳤기 때문에 혁명성을 부인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헌법전문에 삽입하고자 하는 권고도 철회되어야 한다.

3. 헌법전문에 첨부되어야 할 사건과 5.18민주화운동

(1)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권고안 등에 대한 평가

1) 제1안(자문위 권고안)

- ① 독재와 불의에 항거한 사건을 기준으로 4.19혁명과 6.10항쟁만을 명시하자고 하나, 왜 2사건만 독재와 불의에 항거한 사건인지 의문이다.
- ② 국민의 투쟁에 의해 헌법개정이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만을 저항권으로 보며 2가지만 명시하자고 하나, 국민의 투쟁이 아닌 것이 없으며, 역사적 평가에 있어서 성공한 저항권보다도 실패했지만 우리 현정사에서 민주화운동의 기틀을 뿌리부터 뒤흔들어 놓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무시하는 쳐사이다.

13) 김선수, “헌법 전문과 민주이념 토론문”, 한국헌법학회, 광주광역시 주최, 개헌토론회-헌법전문과 민주이념 - 세미나자료, 87면.

2) 제2안 :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및 6.10항쟁(혁명)의 민주이념.

① 이 안은 모든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킬 수 있다. 이미 발의된 문재인정부의 개정안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② 그러나 간결함을 요하는 전문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

3) 제3안(최장집안) : 헌법의 “실체적 내용의 중립성”의 시각에서 현행헌법의 골격을 유지하되, 민족국가의 정통성을 표현하는 3.1운동의 정신과 우리 헌정사에서 최초로 민주화를 위한 저항권의 발로에 해당하는 4.19의거의 민주이념만 남기자.

① 이 안은 정치적 분란을 없애고 타협을 가능하게 하자며, 개헌 자체에 주목하는 장점이 있다.

4) 개인적 의견

① 혁명과 저항권의 성격 등 위에서 지적한 본인의 학문적 토대를 근거로 한다면, 3.1독립정신과 더불어 우리 헌정사에서 면면히 이어지고 있는 부패한 독재정권에 항거한 저항정신을 빼고 전문을 구성할 수 없다고 본다.

② 그런데 4.19의거는 최초의 저항권의 행사이기는 하지만 전형적 저항권이 아닌 점에서, 부마항쟁은 박정희정권의 몰락을 가져왔으나 계속적 민주화운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5.18민주화운동에 가려진 점에서, 5.18민주화운동은 전형적 저항권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치학자나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성격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세력 때문에,¹⁴⁾ 6.10항쟁은 5.18민주화운동과 별도로 독자적 혁명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각자의 문제가 있다.

③ 결국 최초의 저항권이었다는 점에서 4.19의거를 뺄 수 없고, 전형적 저항권의 행사였던 5.18민주화운동을 무시하고 저항권을 논할 수 없으며, 5.18민주화운동은 16년 후에야 성공한 저항권으로 보고 입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성공으로 평가되는 시점까지의 전 과정(6.10항쟁 등)을 포괄해서 평가해야 한다면,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터 잡은 6.10혁명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해야 한다.

(2) 5.18민주화운동은 광주지역에 국한된 지역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① 5.18민주화운동은 광주지역에서만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1980년 ‘서울의 봄’으로 상징되는 민주화열기를 반영한 저항운동이었다. 혹자는 6.10항쟁과 비교하여 국지성과 지방성을 고려하여 지역적 한계를 주장하는데,¹⁵⁾ 그것은 광주에서의 10일간

14) 심지어 성공한 저항권으로 입법화가 되었음에도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는 괴변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다.

의 저항행위만을 고려한 것으로서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발상이다. 5·18민주화운동은, 12·12쿠데타를 감행한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가 정권찬탈의 야욕을 드러내자, 이를 간파한 1980년 ‘서울의 봄’ 참여자들이 시작한 전국각지의 저항운동이었으며, 5월 17일 낮까지 진행되던 저항운동에 대하여 신군부가 비상계엄 전국으로의 확대를 기점으로 공포정치의 일환으로 광주를 지목하고 살상을 자행한 것에 대한 능동적 저항운동이었다. 광주의 실상을 일방적 보도로 접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공포에 빠져 저항의지가 꺾였을 뿐, 처음부터 광주에서만 일어난 저항운동은 아니었다.

- ② 따라서 5·18민주화운동의 지역적 한계를 말하는 것은 역사의식이 결여된 단편적 주장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5·18민주화운동의 지역적 한계를 주장하는 사람은 신군부에 동조하는 사람이거나, 1980년 5월의 ‘서울의 봄’으로 상징되는 민주화운동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그게 아니고 참여했던 사람이라면 ‘서울의 봄’이라는 역사적 상황을 신군부가 거스르는 것을 보면서도 방관하고 순응하며 비겁한 행동을 한 사람들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IV | 결론으로서 5·18민주화운동의 헌정사적 의미

- ① 5·18민주화운동은 국가론의 시각에서 국가의 존립근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에 있다는 가장 중요한 국가권력의 목적과 과제를 상기시켜 주었다. 5·18민주화운동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도 이러한 토대 위에 있다.
- ② 5·18민주화운동은 ‘전형적 저항권’의 행사로서 다른 저항권과 달리 무자비한 처벌과 탄압을 이기고 민주화운동으로 승화시켜 성공한 가장 의미 있는 저항정신의 상징이 되었다. 국가권력이 존립근거를 상실하면 주권자인 국민이 죽음으로 저항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③ 5·18민주화운동은 당시의 합법적이지만 부패한 국가권력에 항거한 것이 아니라 불법하게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려는 ‘헌법의 적’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저항권의 행사였다. 특히 성공한 쿠데타란 인정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겨 이후의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에 획기적인 변혁을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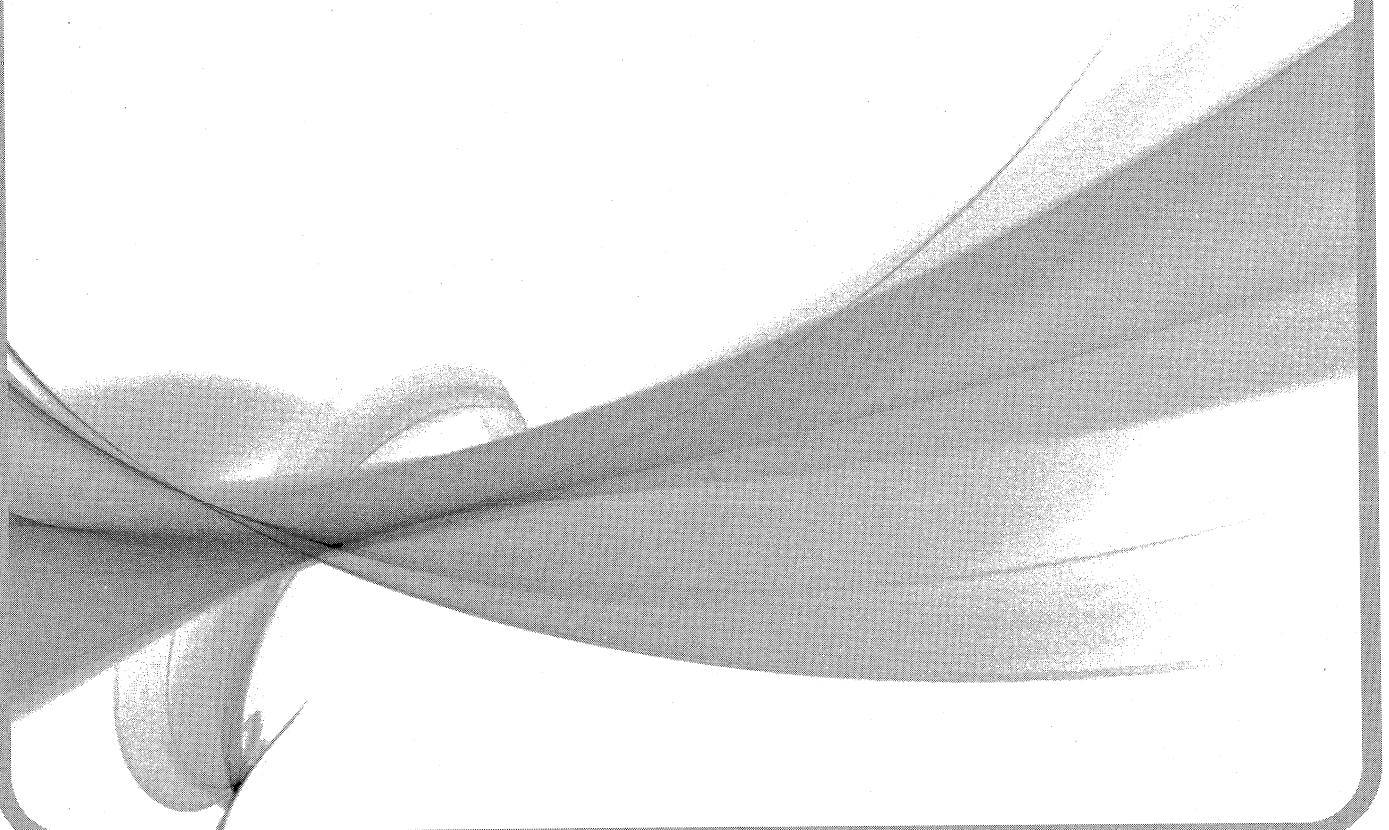
15) 김학성, “헌법 전문과 민주이념 토론문”, 한국헌법학회, 광주광역시 주최, 개헌토론회-헌법전문과 민주이념 - 세미나자료, 세미나자료, 94면.

- ④ 5.18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주체를 대학생중심의 운동에서 일반대중으로 옮겨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 CIA의 평가처럼 이전까지 소수의 학생운동세력에 국한된 것으로 표현하다가 소위 ‘광주세대’라고 불리는 민주화운동세력의 명칭을 붙인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즉 대학생중심의 민주화운동이 노동계에 확산되는 등 전 국민적 민주화운동으로 발전한다.
- ⑤ 5.18민주화운동은 ‘4.19세대’에 이어 ‘유신세대’를 뛰어넘는 ‘3.86세대’를 형성하며 민주화운동의 큰 변화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노사관계, 대북관계, 한미관계 등이 대표적인데 분야인데, 노동운동과 관련하여 3.86세대의 운동가들은 노동현장에 뛰어들어 노동운동을 주도하기 시작했고, 대북관계와 관련하여 보수적이던 반공세력에 반대하며 운동권이 NL계열과 PD계열로 나뉘지며 대북관계의 변화를 추구했다. 그리고 친미보수정권을 지지하며 작전통제권을 올바로 행사하지 못한 미국에 대한 극도의 불신으로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이후 반미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 ⑥ 5.18민주화운동은 혁명적 민주화운동으로 발전하는 기틀이 되었다. 특히 1980년 5월 ‘서울의 봄’을 통하여 분출된 국민주권이념의 확립, 즉 유신헌법에 의하여 빼앗겼던 대통령직선제를 비롯하여 국민주권의 이념을 망각한 각종 제도(대표적으로 선거제도)의 확보를 위해 끊임없는 투쟁의 장을 열어주었다. 이러한 운동의 결과가 제5공화국말기의 6.10 항쟁으로 귀결되었음을 말할 필요도 없다.

• 토론문 5 •

김귀옥 상임의장

민교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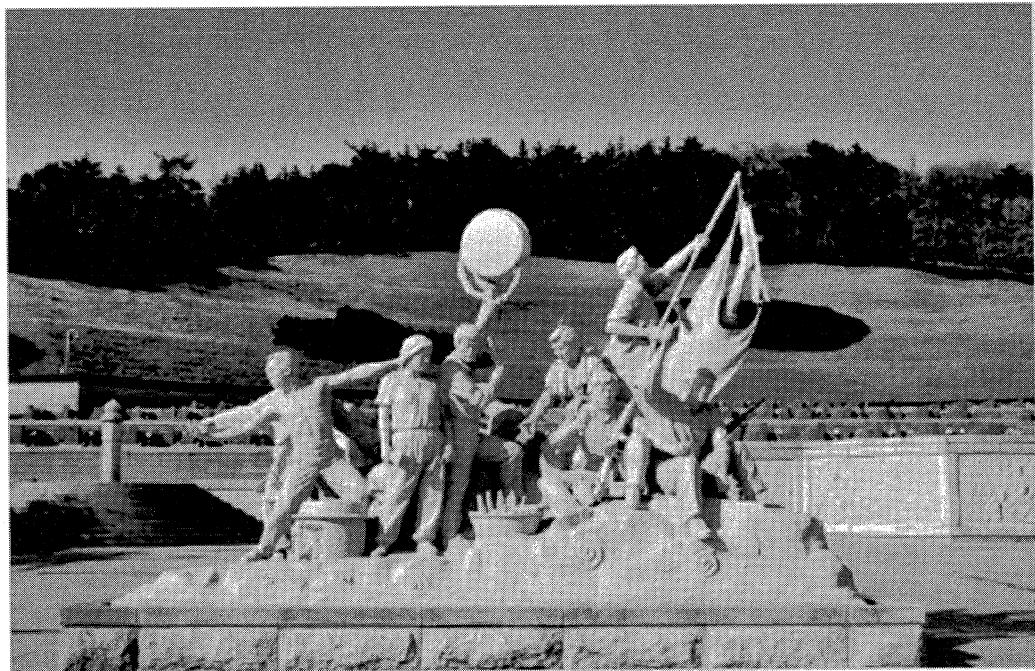
토론문 5

김귀옥 상임의장(민교협)

1 들어가며

5월 광주의 민(民)들이 꿈꿨던 대동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동서 구별이 없고, 남북 구별이 없고, 남녀 구별이 없는 평등한 대동의 세상. 동학 농민들이 꿈꿨던 세상이나, 1871년 파리코뮌의 민들의 새로운 세상과도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또한 5월 광주 민들의 꿈과 2016년 촛불항쟁 시민들의 탄핵의 목소리와는 얼마나 맞닿아 있을까?

대동세상군상



- 슬픔을 닦고 승리를 노래하며 질서와 치안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대동세상의 모습을 묘사
- * 출처: 국립5·18민주묘지(<https://518.mpva.go.kr/>)

오늘 김세균 선생님이 발표한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으로서의 광주민중항쟁의 역사적 의의와 미래적 가치에 대해서 100% 공감하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보편적 민주주의에 대한 분석적 규명과 역사적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미래 지향적 가치를 펼쳐나가는 맥락에는 원로의 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깊은 통찰과 대중적 용이한 표현과 설득력에 감탄을 표하며 후학의 입장에서 거인의 어깨위에 서고 싶은 마음으로 사족같은 논평을 더하고자 한다.

2 | 질문과 문제제기

첫째.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주체인 민(民) 또는 민중으로서의 인식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서구 정치학에서 민주주의의 기원을 아테네 정치를 이상화한 것은 주지의 사실임. 아테네 정치의 주체로서의 시민이 과연 민인가? 시민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살펴야 함은 당연지사이겠으나 인구의 반인 여성이 빠지고, 노동자(노예 등), 외국인 등이 빠진 채, 재산권과 지식을 갖춘 인구의 일부로서 공동체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주체인 시민을 과연 민(people)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귀족을 포함한 엘리트의 성격이 더 강한 것은 아닐지. 서구적 맥락에서 아테네의 시민이나 서구 근대 자유주의적 브르조와는 한국적 맥락의 사(士)와 더 가까운 개념이 아닐까?

광주항쟁이나 한국 현대사에서의 민은 인민으로서의 'people'에 부합하여 반독재, 반식민주의(반제국주의), 반가부장적 민중의 재발견 위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함.

둘째, '인민'으로서의 people과 '민중'으로서의 people의 한계를 뛰어넘기.

인민과 민중의 개념의 등장은 남북 분단과 대결 문화의 산물임. 해방 공간에서의 인민은 북한만의 용어가 아니라, 남북 모두의 공동어이자 people의 번역어이자, 일제의 신민에 대항하는 개념이고, 지배계층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사용. 유명한 링컨의 민주주의의 정의는 "인민의, 인민을 위한 인민의" 민주주의로 통용되었으나, 언제가 인민은 사라지고 북한의 언어로 금기시 되어 국민이라는 말만 남았음. '국민'이야 말로 일제 식민주의를 잇는 개념이고, 과거에도 문제가 있었으나 글로벌시대 세계시민의 인식이 필요한 시대에는 한계가 명확한 개념임. 대한민국 시민이 해외에서도 인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도 국민적 인권 개념은 바뀌어야 함.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세계인들의 항쟁사의 하나로 인식할 때도 국민적 한계를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맥락에서 발표자의 각주 2번이 개헌 제안에 대해 적극 동의함.

셋째, 근대적 민주주의의 가치와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민주주의 인식을 비교 검토하기.

서구적 맥락의 민주주의의 성격에는 근대국가적 가치와 한계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1868년

메이지유신에 의해 탄생한 일본제국과 메이지 유신 민주주의는 일본의 특수성과 모순을 보이지만 역사를 좀더 래디컬하게 바라보면 서구의 근대 민주주의 역시, 민주적 가치와 제국주의적 가치가 상존하고 있고, 심지어 서구는 제국주의 또는 식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가치로 포장하여 제국주의적 침략과 점령을 근대화, 민주주의라는 가치 위에 식민주의=근대화, 또는 문명화로 주장해왔음. 그런 의미에서 맑스의 인도 식민주의에 대한 지지 표명의 근저에는 서구 근대주의자로서의 한계가 여실히 존재함.

광주항쟁의 민주주의에는 서구적 민주주의적 가치만으로는 환원되기 어려운 반독재뿐만 아니라, 반외세(반미)적 민주주의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은가? 5·18이 왜 부미방, 미문화원사건 등으로 확산될 수 밖에 없었던가?

넷째, ‘역사적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인정과 다른 생각.

선생님의 ‘역사적 민주주의’는 서구 민주주의를 보편적 가치로 설정하는 많은 한국 연구자들의 인식적 한계를 뛰어넘는 중요한 개념임. 어떤 이념이나 사상도 이상형(ideal type)으로 존재할 뿐 현실 그 자체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논의.

역사적 민주주의로서 한국 민주주의의 성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또한 저항운동에서 나타난 해방 공간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1960년 4·19혁명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 그리고 1980년 서울의 봄과 5·18광주민주화운동의 폭발성과 87년 6·10민주화항쟁 등에서 나타난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은 무엇일까? 선생님은 5·18광주민주화운동과 1871년 파리코뮌과의 차이를 새로운 정권 수립 문제를 놓고 한계를 설명하였음. 파리코뮌의 사회주의자, 노동자·민중 정부에 대한 열망은 분명 5·18광주민주화운동 속에서는 없었음. 그럼 ‘대동세상’에 대한 갈망과 그런 대동세상을 만들겠다는 신념과 운동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1960년의 4·19를 1960년만 놓고 보는 것과 1961년 5·16 쿠데타 이전까지를 연속선으로 사고하는 것은 다르지 않는가? 1980년대 왜 많은 사람들은 ‘사회구성체론’에 죽기 살기로 매달렸던가?

3 |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또 다른 가치를 향한 노력

마지막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미래적 가치로서 몇 가지 부언하면서 정리하고자 함.

우선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생존권적 저항운동으로서의 평화적 가치를 제시했음. 민주주의는 많은 약점을 가진 이념임. 그러나 민주라는 기준과 가치가 얼마나 잘 구현되는가라는 점에서 어떤 이념보다도 성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 될 수 없는 특징을 가지며, 자유와 평등이 상존하기 위해서는 내재적으로 평화적 원리를 가질 수밖에 없음.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생존하기 위해 무장을 했으나, 지배를 위한 무장이 아닌, 저항을 위한 무장이었고, 저항이 폭력, 또는 테러리즘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한계의 문턱을 만들어 평화의 의미를 부각시켰음.

다음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은 국민의 한계를 넘어서서 민의 가치와 함께 동아시아 민중 연대적 가치와 세계시민적 가치를 시사했음. 1980년 당시 반미의 무풍지대로서의 대한민국의 개념을 깨고, 3세계 민중들의 반독재, 반외세, 민주화운동에 연대할 수 있는 운동의 가치를 갖게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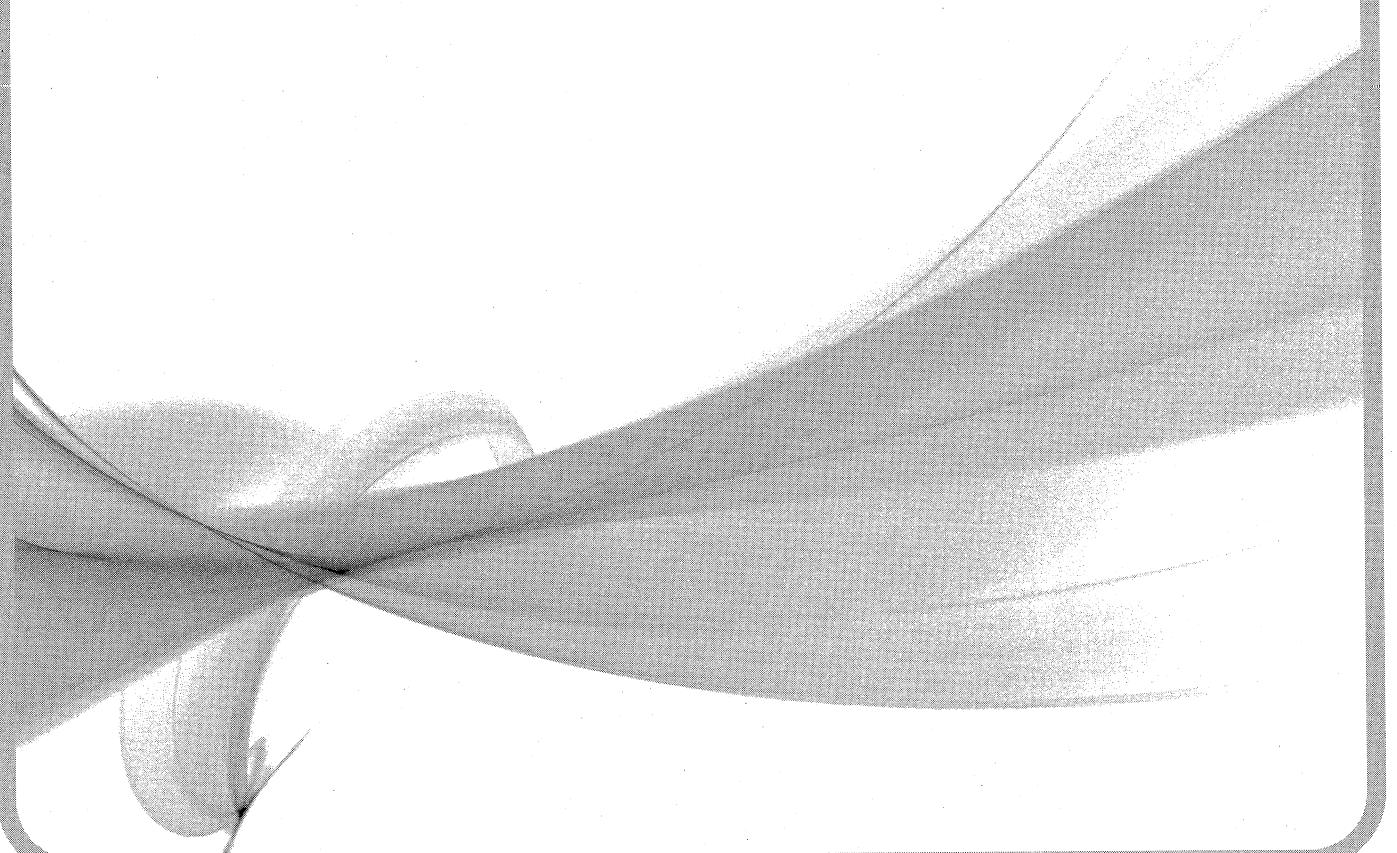
나아가 5·18광주민주화운동은 극한적 상황에서도 타자성을 극복하는 가능성을 보여줬음. 서구의 근대 이성은 주체에 기반한 개념. 근대 이성은 2차 세계대전 때 훌로코스트 과정에서 몰락을 보임. 5·18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보여준 해방구, 공동체의 참여자들은 계급적으로 나 사회 신분적으로나 성별로나 다양했고, 참여 동기나 욕망도 천차만별이고, 운동과 시작과 과정, 결과도 다양했으나 공동의 목표를 향해 자신을 낮추고 타자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임. 이는 서구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한국 전통의 대동세상이나 공동체 사상과 깊은 연관이 있음. 전통적 공동체 사회에서는 아와 피아의 구별이 약하고, 개성보다는 집합적 가치가 우위였음. 2002년부터 계속되는 촛불집회와 2016년 촛불 항쟁 속에서 구현된 공동체성과 한국 운동권의 흐름 속에 담긴 공동체성에 대한 심화된 연구가 필요한 듯.

개정 헌법이 발효가 되면 5·18광주민주화운동은 공식적으로 한국 민주화 운동사의 중심에 서게 됨. 이 운동의 가치가 권력화(기득권화)나 몰역사화, 절대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욱 민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대한민국을 넘어, 한반도, 동아시아, 세계의 민과의 연대와 평화로서의 가치를 적극 발현한 대동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 이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치·경제적 노력만이 아니라, 문화적, 교육적 노력이 지속화되어야 할 것임.

• 토론문 6 •

최용주 박사

5·18기념재단 비상임연구원



MEMO

MEMO

MEMO

MEMO